관세연구 22-03

RCEP 관세차별조항의 이해와 적용

2022. 12.

홍용기 · 이재선

KIPF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세법연구센터

연 구 진

연구책임자

홍 용 기 부연구위원

공동연구원

이 재 선 특수전문직 3급

목 차

Ⅰ. 서론 ····· 1

Ⅱ. 관세차별조항의 개요 ····· 4
1. 관세차별의 개념 ····· 4
가. 관세차별의 의의 ····· 4
나. 관세차별 운영 현황 ····· 7
2. 원산지규정 및 관세차별조항 ····· 13
가. 원산지규정 ····· 14
나. 관세차별조항 ····· 22

Ⅲ. 관세차별조항 적용상 쟁점 및 유의사항 ····· 25
1. 관세차별조항의 적용범위 ····· 25
가. 쟁점사항 ····· 25
나. 유의사항 ····· 35
2. 원산지재료 생산물품에 대한 최소공정 외의 공정 수행 시기 ····· 40
가. 쟁점사항 ····· 40
나. 유의사항 ····· 45
3. 민감품목의 국내부가가치 누적 ····· 48
가. 쟁점사항 ····· 48
나. 유의사항 ····· 53

Ⅳ. 시사점 및 개선방안 ····· 56
1. 관세차별조항의 적용범위 명확화 ····· 56
2. 완전누적의 도입 ····· 61
3. 관련 양식의 정비 및 활용 ····· 68

참고문헌 ····· 74

표 목차

〈표 Ⅱ-1〉 RCEP 공통 관세양허표 예시(캄보디아) ····· 8
〈표 Ⅱ-2〉 RCEP 상대국별 관세양허표 예시(한국) ····· 8
〈표 Ⅱ-3〉 RCEP 공통 관세양허표 및 상대국별 관세양허표 결합 예시(필리핀) ····· 10
〈표 Ⅱ-4〉 RCEP 공통 관세양허표상 관세차별 예시(일본) ····· 11
〈표 Ⅱ-5〉 당사자별 관세양허표 운영 현황 ····· 12
〈표 Ⅱ-6〉 RCEP 원산지결정기준의 구성 ····· 16

〈표 Ⅳ-1〉 불인정공정의 누적을 인정하는 FTA 조항 ····· 67

그림 목차

[그림 Ⅱ-1] 무역굴절효과 예시 ····· 5
[그림 Ⅱ-2] RCEP 내의 무역굴절효과 예시 ····· 6
[그림 Ⅱ-3] RCEP 관세차별조항의 무역굴절효과 방지 예시 ····· 7

[그림 Ⅲ-1] 관세차별조항 적용 여부에 따른 원산지국가 결정 예시 1 ····· 28
[그림 Ⅲ-2] 관세차별조항 적용 여부에 따른 원산지국가 결정 예시 2 ····· 29
[그림 Ⅲ-3] 원산지증명서 원산지국가 기재요령 ····· 32
[그림 Ⅲ-4] RCEP 원산지국가 결정 순서도 ····· 33
[그림 Ⅲ-5] RCEP 원산지규정과 관세차별조항의 관계 ····· 35
[그림 Ⅲ-6] 「RCEP 발효에 따른 관세행정 운영지침」상 관세차별 적용대상 ····· 36
[그림 Ⅲ-7] 「RCEP 발효에 따른 관세행정 운영지침」상 원산지국가 결정방법 ····· 37
[그림 Ⅲ-8] 「RCEP 발효에 따른 관세행정 운영지침」상 관세차별 적용결과 ····· 38
[그림 Ⅲ-9] 원산지재료 생산물품 원산지국가 결정 예시 1 ····· 43
[그림 Ⅲ-10] 원산지재료 생산물품 원산지국가 결정 예시 2 ····· 43
[그림 Ⅲ-11] 다른 당사자에서 생산된 원산지재료가 사용된 물품 원산지국가 결정 예시 ····· 48
[그림 Ⅲ-12] 국내제조확인서 활용 예시 ····· 52

[그림 Ⅳ-1] 완전누적 적용 사례 ····· 63
[그림 Ⅳ-2] 원산지확인서 발췌 ····· 69
[그림 Ⅳ-3] 원산지소명서 발췌 ····· 70

Ⅰ. 서론

□ 2022년 2월 1일 세계 최대 규모의 FTA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RCEP)이 우리나라에서 발효됨

○ RCEP 체결로 전 세계의 인구 29.7%, GDP 30.8%, 수출입 31.9%를 차지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경제블록이 탄생됨[1)]

□ RCEP은 세계 최대 규모의 경제통합체라는 사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가 체결한 최초의 다자간 FTA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짐

○ 우리나라는 EFTA, ASEAN, EU, 중미 등 다수의 국가를 체약국으로 하는 FTA를 체결하였지만 이는 다자간 협정이 아니라 양자 간 협정의 일종인 1:N 협정임

- 다만, 한-EU FTA는 EU 자체도 체약당사자이므로 1:1 협정으로 볼 수 있음

□ 다자간 FTA인 RCEP에는 양자 간 FTA와는 달리 여러 체약당사자 간의 상품무역에 적용되는 별도의 원산지규정[2)]이 필요함

○ 다자간 FTA의 경우 물품이 여러 체약당사자를 거쳐 생산·거래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어떤 당사자를 원산지국가[3)]로 보아야 할지 규정이 필요함

□ 이에 따라 RCEP에서는 물품의 생산에 관여한 다수의 체약당사자 중 원산지국가를

---

1) YES FTA, https://www.customs.go.kr/ftaportalkor/cm/cntnts/cntntsView.do?mi=11020&cntntsId=5740, 검색일자: 2022. 11. 21.

2) 원산지규정이란 물품의 원산지를 결정하기 위하여 적용되는 판정기준을 말함(국제원산지정보원, 『원산지관리사 교육과정 Ⅱ(품목분류실무, 원산지결정기준)』, 2010, p. 281

3) 원산지국가란 물품의 생산·가공·제조 등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는 국가임(관세청 관세용어사전, https://www.customs.go.kr/kcs/ad/tr/trTermView.do?mi=2902&s=&termId=1050, 검색일자: 2023. 3. 17.)

결정하기 위하여 관세차별이라는 조항을 마련하고 있음

○ 관세차별조항은 수입당사자가 하나의 물품에 대하여 상대 당사자별로 상이하게 관세를 양허한 경우 원산지상품의 원산지국가를 결정하는 규정임

□ 관세차별조항은 기존에 우리나라가 체결한 양자 간 FTA에서는 규정되지 않은 조항으로 이를 적용하고 활용하기 위해서 유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특히 우리나라는 상대 당사자별로 관세양허표를 별도로 마련하고 있으므로 RCEP 협정세율 적용 시 정확한 원산지국가를 확인하여야 함

□ 먼저 어떤 물품에 대하여 관세차별조항이 적용되는지 그 대상과 범위를 살펴보아야 함

○ 관세차별조항은 원산지판정의 기본원칙과 기준을 충족한 RCEP 원산지상품이 RCEP 당사자 중 어떤 당사자에서 생산되었는지 결정하기 위한 규정임

□ 즉 이러한 관세차별조항이 체약당사자마다 상이한 관세대우를 받는 품목에만 적용되는지 모든 원산지상품에 적용되는지 검토가 필요함

○ 만약 공통관세율이 적용되는 품목에는 관세차별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면 해당 품목은 기존의 FTA와 마찬가지로 원산지규정에 따라 원산지국가를 결정하게 됨

○ 이와 같이 품목에 따라 원산지국가를 결정하기 위한 규정이 달라지면 RCEP 당사자가 상이한 관세율을 적용하는 정책적 목적이 달성될 수 있을지 살펴보아야 함

□ 또한 관세차별조항은 원산지국가를 결정하기 위해 부가적인 원산지국가 결정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함

○ 각 체약당사자가 정한 민감품목은 수출국에서 일정비율 이상의 부가가치가 창출되어야 하므로 원재료와 물품의 가격 정보를 추가로 확보해야 함

○ 이뿐만 아니라 원산지재료로 생산된 물품에 대하여도 별도의 최소공정 규정이 적용되므로 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함

□ 이와 같이 관세차별조항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규정의 이해와 관련 규정과의 관계 파악이 필요함

○ 관세차별조항의 적용 오류로 원산지국가를 잘못 결정하는 경우 협정세율을 적용받지 못하거나 사후 높은 협정세율이 적용되어 관세가 추징될 수 있음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RCEP의 관세차별조항의 특수한 규정을 살펴보고, 이를 적용하기 위하여 유의해야 할 사항과 추후 발전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 제Ⅱ장에서는 관세차별조항의 의의와 운영 현황을 파악하고, 관세차별조항 및 이와 관련한 원산지규정을 검토하고자 함
- 제Ⅲ장에서는 관세차별조항을 적용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쟁점사항과 이에 따라 원산지국가를 결정하는 때에 유의해야 할 사항을 살펴보고자 함
- 제Ⅳ장에서는 RCEP은 아직 시행초기로 협정뿐 아니라 우리나라의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므로 이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함

Ⅱ. 관세차별조항의 개요

1. 관세차별의 개념

가. 관세차별의 의의

□ RCEP 당사자[4]는 각 상대 당사자에 대한 관세양허표를 개별적으로 작성할 수 있으며, 따라서 같은 품목이라도 수출당사자에 따라 관세율이 달라짐[5]

○ 우리나라를 포함한 일부 당사자는 모든 상대 당사자에 대해 공통의 양허표를 적용하지 않고 상대국에 따라 정해진 양허표를 적용함

□ RCEP에서는 당사자들은 관세차별을 수입당사자가 동일한 원산지상품에 적용하는 상이한 관세대우를 지칭하는 것으로 양해한다고 명시하고 있음[6]

○ 즉 관세차별이란 동일한 물품에 대하여 원산지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는 관세라고 할 수 있음

□ 이와 같이 RCEP 원산지상품에 대하여 원산지국가에 따라 관세율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우회수출이 발생할 수 있음

○ C국이 X물품을 A국에서 수입 시 10%, B국에서 수입 시 2%의 관세를 부과하는 경우, A국산 물품이 B국을 단순 경유하여 C국으로 우회수출될 수 있음[7]

---

4) 당사자란 「RCEP 협정」이 효력이 있는 모든 국가 또는 개별 관세 영역을 말하며(「RCEP 협정」 제1.2조 러목), 2023년 1월 현재 브루나이, 캄보디아, 라오스,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에서 발효되었음(미얀마, 필리핀은 미발효)

5) 관세청,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발효에 따른 관세행정 운영지침」, 2022. 1., p. 18

6) 「RCEP」 제2.6조 제1항

- 이 경우 해당 물품은 10%가 아닌 2%의 관세를 적용받아 8%의 관세절감 효과를 누릴 수 있음

□ 이러한 우회수출과 같은 무역왜곡 현상은 FTA에 따른 무역굴절효과로 일반적으로 FTA 협정국이 역외국가에 대하여 서로 다른 수준의 관세를 부과함에 발생함[8)]

○ 즉 낮은 역외관세를 부과하는 체약국을 통해 수입되는 중간재가 역외관세가 높은 체약국으로 무관세로 재수출되는 현상을 말함

[그림 Ⅱ-1] 무역굴절효과 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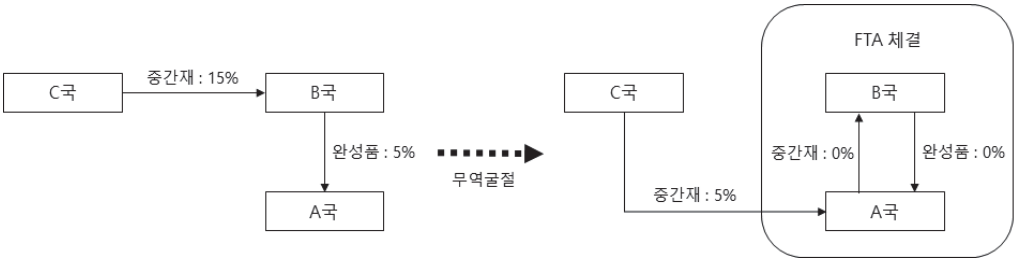

자료: 이명구 외 2인(2016), p. 24.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 이와 같은 무역굴절효과는 FTA 협정에서 원산지규정을 엄격히 적용함으로써 방지 및 제거가 가능함

○ 원산지규정을 통해 체약국이 원산지인 물품에 대하여 FTA에 따른 특혜세율을 적용함으로써 역외관세가 낮은 체약국을 우회하여 수출되는 현상을 방지함

□ RCEP 또한 원산지규정을 통해 RCEP에서 충분한 가공을 거쳐 생산되었다고 인정되는 원산지상품을 역외생산물품과 구분하고 있음

○ RCEP 원산지상품은 RCEP에서 정한 특혜관세인 RCEP 협정세율을 적용받을 자격을 가지게 됨

---

7) 관세청(2022. 1.), p. 18
8) 이명구·정재완·정재호, 『FTA 이해와 활용』, 청람, 2016, p. 24

□ 그러나 RCEP의 경우 당사자 간에 관세율 차이가 존재하여 무역굴절효과와 같은 왜곡현상이 당사자 내에서 발생할 수 있음

○ 수출당사자는 RCEP 원산지상품을 상대적으로 낮은 RCEP 협정세율이 적용되는 당사자를 통해 우회하여 수출함으로써 높은 관세율의 적용을 회피할 수 있음

[그림 Ⅱ-2] RCEP 내의 무역굴절효과 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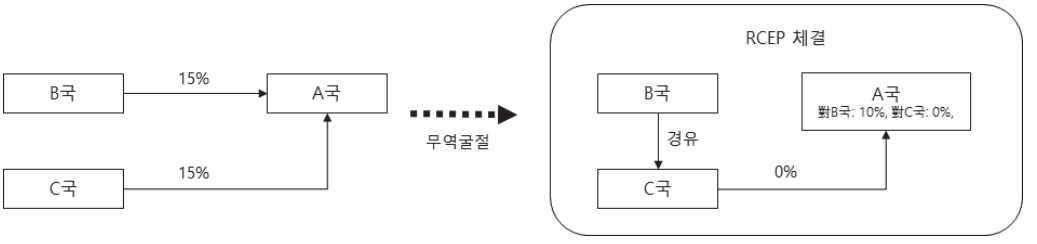

자료: 저자 작성

□ 따라서 원산지상품에 대해 RCEP 당사자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무역왜곡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RCEP 당사자 중 원산지국가를 결정하기 위한 규정이 필요함

○ 이러한 규정을 통해 원산지상품에 대해 적용될 수 있는 RCEP 특혜관세율 중 어떤 당사자에 대한 관세율을 적용할지 결정해야 함

□ RCEP에서는 관세차별조항을 마련하여 원산지상품의 원산지국가를 결정하기 위한 요건을 규정하고 있음

○ 원산지상품 여부를 결정하는 원산지규정 외에 원산지상품의 원산지국가가 어떤 당사자인지 결정하는 조항을 별도로 마련하고 있음[9)]

9) 「RCEP 협정」에서는 원산지규정을 제3장에 명시하고 있으며, 관세차별조항은 제2장 상품무역에 포함하고 있음

[그림 Ⅱ-3] RCEP 관세차별조항의 무역굴절효과 방지 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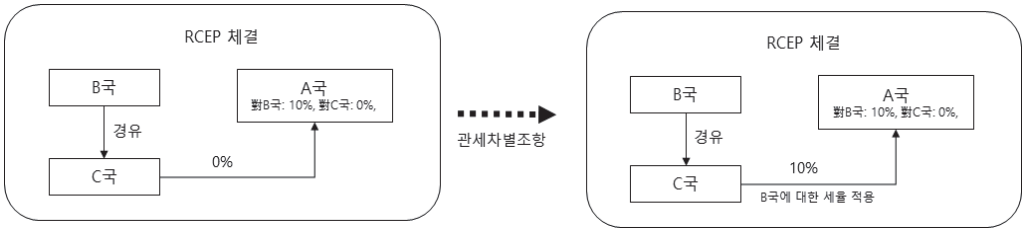

자료: 저자 작성

□ 이와 같이 RCEP에서는 RCEP 협정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원산지자격과 RCEP 협정세율 중 어떤 세율을 적용할지를 결정하는 원산지국가를 구분하고 있음

○ RCEP에서는 원산지상품 여부 즉 원산지자격은 원산지규정에 따라, 원산지상품의 원산지국가는 관세차별조항에 따라 결정함

□ 즉 관세차별조항이란 RCEP의 원산지지위를 획득한 상품에 대하여 원산지국가를 결정하는 규정임

○ 「RCEP 협정」에서는 해당 조항을 '관세차별'로 명명하고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협정국 내의 관세대우 차이와 구별하기 위하여 관세차별조항으로 기술함

- 즉 관세율의 차이 자체를 관세차별로, 관세차별의 대상물품을 관세차별품목으로 원산지상품의 원산지국가를 결정하는 규정을 관세차별조항으로 구분함

나. 관세차별 운영 현황

□ 「RCEP 협정」에서는 부속서 1에서 당사자별 관세양허표를 규정하여 RCEP에 따른 연도별 협정관세율을 명시하고 있음

○ 부속서 1은 일반두주, 각 당사자별 관세양허표와 부록으로 구성되어 RCEP에 따른 관세양허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음

□ RCEP 당사자는 각 당사자별 관세양허표를 통하여 모든 당사자에 공통으로 관세를 양허하거나 원산지국가에 따라 관세양허 수준을 다르게 정함

○ 브루나이·캄보디아·라오스·말레이시아·미얀마·싱가포르·호주·뉴질랜드는 당사자 전체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단일한 관세양허표를 운영함

○ 태국·일본은 하나의 관세양허표를 정하고 있지만 특정 품목에 대하여 상대국별 협정관세를 다르게 정하고 있음

○ 반면 한국과 인도네시아·필리핀·베트남·중국 5개국은 상대국별 양허표를 별도로 정하여 동일한 원산지상품에 대하여 상이한 관세대우를 적용함

〈표 Ⅱ-1〉 RCEP 공통 관세양허표 예시(캄보디아)

부속서 Ⅰ
캄보디아 관세양허표

AHTN코드	품목명	기준 세율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	…	20년차 이후
01	살아있는 동물								
01.01	살아있는 말·당나귀·노새 및 버새								
	-말								
0101.21.00	--번식용	0%	0%	0%	0%	0%	0%	…	0%
0101.29.00	--기타	15%	15%	13.5%	12%	12%	10.5%	…	0%

자료: 「RCEP 협정」 부속서 1 캄보디아

〈표 Ⅱ-2〉 RCEP 상대국별 관세양허표 예시(한국)

부속서 Ⅰ
한국 관세양허표
제1절 : 아세안 회원국

HSK 2014	품목명	기준 세율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	…	20년차 이후
0102	살아있는 소								
0102.29	기타								
0102.29.10.00	젖소	40%	39.5%	39%	38.5%	38%	37.5%	…	30%
0102.29.20.00	육우	40%	U[1)]	U	U	U	U	…	U
0102.29.90.00	기타	0%	0%	0%	0%	0%	0%	…	0%

〈표 Ⅱ-2〉의 계속

부속서 Ⅰ
한국 관세양허표
제2절 : 호주

HSK 2014	품목명	기준 세율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	…	20년차 이후
0102	살아있는 소								
0102.29	기타								
0102.29.10.00	젖소	40%	U	U	U	U	U	…	U
0102.29.20.00	육우	40%	U	U	U	U	U	…	U
0102.29.90.00	기타	0%	0%	0%	0%	0%	0%	…	0%

주: 1) 이 양허표의 각 인하 단계에 “U”로 표시된 세번은 관세 인하 또는 철폐의 모든 약속으로부터 제외됨(「RCEP 협정」 부속서 1 한국 두주 4)
자료: 「RCEP 협정」 부속서 1 한국

□ 이와 같이 관세차별품목을 정하고 있는 국가는 상대국별 관세양허표를 별도로 정하거나 특정국가 및 일부품목에 대하여 예외를 두어 상이한 관세대우를 함

○ 한국과 인도네시아·베트남·중국은 ASEAN, 각 상대국별 관세양허표를 정하고 있음

○ 필리핀은 공통양허표를 정하고 특정국가에 대한 일부 품목에 적용하는 관세율을 별도의 양허표로 정하고 있음

○ 태국·일본은 공통양허표에 특정 품목에 대한 상대국가별 협정관세율을 명시하여 관세차별을 운영하고 있음

〈표 Ⅱ-3〉 RCEP 공통 관세양허표 및 상대국별 관세양허표 결합 예시(필리핀)

부속서 Ⅰ
필리핀 관세양허표
제1절 : 공통양허(아세안 회원국, 호주, 중국, 일본, 한국 및 뉴질랜드)

AHTN코드	품목명	기준세율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	…	20년차 이후
0103	살아있는 돼지								
0103.10.00	-번식용	1%	0%	0%	0%	0%	0%	…	0%
	-기타								
0103.91.00	--중량이 50㎏ 미만인 것								
0103.91.00A	---쿼터초과	30%	30%	30%	30%	30%	30%	…	20%
0103.91.00B	---쿼터이내	35%	35%	35%	35%	35%	35%	…	0%

부속서 Ⅰ
필리핀 관세양허표
제1절 : 중국

AHTN코드	품목명	기준세율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	…	20년차 이후
0103	살아있는 돼지								
	-기타								
0103.91.00	--중량이 50㎏ 미만인 것								
0103.91.00A	---쿼터초과		U[1)]	U	U	U	U	…	U
0103.91.00B	---쿼터이내		U	U	U	U	U	…	U

주: 1) 이 양허표의 각 인하 단계에 "U"로 표시된 세번은 관세 인하 또는 철폐의 모든 약속으로부터 제외됨(「RCEP 협정」 부속서 1 필리핀 두주 3)
자료: 「RCEP 협정」 부속서 1 필리핀

〈표 Ⅱ-4〉 RCEP 공통 관세양허표상 관세차별 예시(일본)

부속서 Ⅰ
일본 관세양허표

세번	품목명	기준 세율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	…	20년차 이후	비고
0103	살아있는 돼지									
010310.000	번식용		Free[1)]	Free	Free	Free	Free	…	Free	
	기타									
010391.000	중량이 50㎏ 미만인 것	8.5%	0%	0%	0%	0%	0%	…	0%	아세안, 호주 및 뉴질랜드에 대한 대우
010310.000	중량이 50㎏ 미만인 것		U[2)]	U	U	U	U	…	U	중국 및 한국에 대한 대우

주: 1) 이 양허표의 각 인하 단계의 “Free”는 무관세를 말함(「RCEP 협정」 부속서 1 일본 두주 3)
2) 이 양허표의 각 인하 단계에 “U”로 표시된 세번은 관세 인하 또는 철폐의 모든 약속으로부터 제외됨(「RCEP 협정」 부속서 1 일본 두주 4)
자료: 「RCEP 협정」 부속서 1 일본

〈표 Ⅱ-5〉 당사자별 관세양허표 운영 현황

	공통	대ASEAN	대호주	대뉴질랜드	대중국	대일본	대한국
브루나이	○	-	-	-	-	-	-
캄보디아	○	-	-	-	-	-	-
인도네시아	-	○	○	○	○	○	○
라오스	○	-	-	-	-	-	-
말레이시아	○	-	-	-	-	-	-
미얀마	○	-	-	-	-	-	-
필리핀	○	○[1]	○[1]		○[1]	○[1]	○[1]
싱가포르	○	-	-	-	-	-	-
태국	○[2]	-	-	-	-	-	-
베트남	-	○	○	○	○	○	○
호주	○	-		-	-	-	-
뉴질랜드	○	-	-		-	-	-
중국	-	○	○	○		○	○
일본	○[2]	-	-	-	-		-
한국	-	○	○	○	○	○	

주: 1) 일부품목에 한함
2) 일부품목은 상대국가별 협정세율을 다르게 정함
자료: 「RCEP 협정」 부속서 1을 바탕으로 저자 작성

□ 한편 「RCEP 협정」 부속서 1은 각 당사자가 원산지상품의 원산지국가를 결정하기 위해 추가적인 요건을 충족하도록 요구하는 품목을 부록으로 포함하고 있음

○ 부록으로 정하는 물품은 민감품목으로서 추가요건을 부과하여 각 당사자에서 가공공정을 통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도록 정하고 있음

□ 부록의 민감품목은 모든 RCEP 당사자가 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한국·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필리핀·태국·베트남·중국·일본만 운영하고 있음

○ 한국은 명태, 사료용 유장, 홍차, 사료용 조제품, 합판, 안전유리, 차량용 엔진 부분품 등 HSK 10단위 기준 99품목[10]을 민감품목으로 정하고 있음

10) HS2012를 기준으로 2014년에 적용 중인 HSK에 따름

○ 다만, 말레이시아는 기존의 RCEP 참여국이었던 인도에 대해 관세차별의 적용대상을 정할 예정으로 인도가 가입절차를 개시할 때까지 부록을 유예하고 있음[11)]

□ 민감품목 또한 관세차별의 대상으로 추가요건에 따라 결정된 RCEP 원산지국가에 따라 적용되는 협정세율이 다름

○ 상대국별 관세양허표를 구분하고 있는 한국·인도네시아·베트남·중국·필리핀은 해당 상대국에 대한 관세양허표가 적용됨

○ 태국·일본은 공통양허표상의 비고란에 구분되어 있는 상대국가별 협정세율이 적용됨

2. 원산지규정 및 관세차별조항

□ 「RCEP 협정」은 관세차별의 적용대상이 되는 모든 원산지상품은 수출당사자가 원산지국가인 경우 수입당사자의 수출당사자에 대한 특혜관세 대우를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음[12)]

○ 즉 원산지상품을 수입하는 경우 해당 상품의 원산지국가인 수출당사자에 대하여 수입당사자의 관세양허표에 규정된 관세양허가 적용됨

□ 이는 원산지상품의 원산지국가가 수출당사자가 아니라면 수출당사자에 대한 수입당사자의 관세양허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함

○ 따라서 관세차별 적용대상이 되는 원산지상품의 원산지국가에 따라 수입당사자가 적용하는 특혜관세 대우가 달라짐

□ 이에 따라 「RCEP 협정」에서는 원산지상품의 원산지국가를 결정하는 기준을 별도로 명시하고 있음

○ 해당 기준을 충족하는 국가를 원산지상품의 RCEP 원산지국가로 봄

---

11) 「RCEP 협정」 부속서 1 말레이시아 제2.6조(관세 차별) 제3항에 관한 부록
12) 「RCEP 협정」 제2.6조 제1항

□ 「RCEP 협정」은 RCEP 원산지국가를 ① 원산지상품 규정에 따라 원산지지위를 획득한 당사자 또는 ② 관세차별조항의 추가기준을 충족한 당사자로 규정함[13)]

○ 대부분의 원산지상품은 원산지상품 규정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의 충족 여부에 따라 원산지국가가 결정되지만 특정 물품의 경우 추가로 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함

가. 원산지규정

□ 관세차별조항은 원산지상품의 RCEP 원산지국가를 결정하기 위한 규정으로 그 적용 대상은 RCEP의 역내산 지위를 획득한 원산지상품에 한함

○ 「RCEP 협정」 제2.6조는 원산지상품의 특혜관세 대우는 RCEP 원산지국가에 따라 달라짐을 규정하면서 원산지상품의 원산지국가 결정기준을 제시함

□ 원산지상품이란 원산지규정에 따른 원산지자격을 갖춘 상품으로 다음의 경우 원산지상품으로 취급됨[14)]

○ 완전하게 획득되거나 생산된 상품에 규정된 대로 당사자에서 완전하게 획득되거나 생산된 경우

○ 하나 이상의 당사자들로부터의 원산지재료로만 당사자에서 생산된 경우

○ 비원산지재료를 사용하여 당사자에서 생산된 상품이 품목별 원산지규정에 규정된 적용 가능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

□ 또한 「RCEP 협정」 제3.2조는 원산지상품은 제3장 원산지규정의 모든 적용 가능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15)]

○ 원산지규정은 원산지결정기준을 정하고 있는 제1절 원산지규정과 원산지증명 절차 및 방법을 규정한 제2절로 구성됨

---

13) 「RCEP 협정」 제2.6조
14) 「RCEP 협정」 제3.1조 타목, 제3.2조
15) 「RCEP 협정」 제3.2조

□ 원산지상품의 판정을 위해 적용 가능한 요건이란 「RCEP 협정」 제3장 제1절의 원산지규정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을 말함

○ 제2절의 원산지증명은 원산지상품에 대해 특혜대우를 적용하기 위한 형식적인 요건으로 원산지상품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아님

□ 즉 「RCEP 협정」 제3장의 원산지규정 중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해야 원산지상품으로서 RCEP 원산지국가를 결정할 수 있음

○ 제3.2조에 따라 원산지상품으로 취급된다고 하더라도 원산지규정에서 정한 다른 요건을 갖추어야 RCEP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될 수 있음

□ 원산지결정기준은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받기 위해 반드시 충족해야 하는 기본원칙과 기본원칙을 보다 용이하게 충족하기 위한 보충·특례기준으로 구분됨

○ 기본원칙은 「RCEP 협정」 제3.2조의 원산지상품 외에 제3.6조의 최소공정 및 가공에서 정하고 있음

- 제3.15조의 직접운송도 원산지상품이 반드시 충족해야 하는 원칙이지만 원산지결정 자체와는 관련이 없고 특혜대우 여부를 결정하는 원칙임

○ 보충·특례기준에는 누적, 최소허용수준, 포장과 포장재료 및 용기의 취급, 부속품·예비부품 및 공구, 간접재료, 대체가능한 상품 또는 재료 등이 있음[16]

□ 원산지결정기준은 원재료 및 물품의 거래·생산과정, 이에 따른 원산지상품의 유형에 따라 다르게 적용됨

○ 물품이 완전생산되었는지, 원산지재료로만 생산되었는지, 불완전생산되었는지에 따라 원산지상품으로 결정되기 위해 충족해야 하는 기본원칙이 달라짐

○ 또한 보충·특례기준은 비원산지재료를 원산지재료로 간주하는 경우에 대한 규정이 대부분이므로 불완전생산물품에 주로 적용됨

16) 「RCEP 협정」 제3.4조, 제3.7조 내지 제3.11조

〈표 Ⅱ-6〉 RCEP 원산지결정기준의 구성

구분	종류
기본원칙	• 완전생산물품: 한 당사자에서 완전 획득·생산 • 원산지재료생산물품: 원산지재료로만 당사자에서 생산 • 불완전생산물품: 품목별 원산지규정 + 최소공정·가공 초과
보충·특례기준	누적, 최소허용수준, 포장과 포장재료 및 용기의 취급, 부속품·예비부품 및 공구, 간접재료, 대체가능한 상품 또는 재료, 생산에 사용된 재료

자료: 「RCEP 협정」 제3장을 바탕으로 저자 작성

□ 뿐만 아니라 「RCEP 협정」에서는 원산지상품의 유형에 따라 원산지국가 결정기준을 다르게 정하고 있음

○ 민감품목이 아닌 완전생산물품, 불완전생산물품은 원산지규정에 따라 원산지국가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17)]

○ 반대로 원산지상품으로서의 지위는 획득했지만 여러 RCEP 당사자가 원산지상품의 생산에 관여한 원산지재료 생산물품은 원산지국가 결정을 위한 추가기준이 필요함

1) 완전생산물품

□ 원산지상품의 목적상 다음 상품은 당사자에서 완전하게 획득되거나 생산된 것으로 여겨짐[18)]

○ 당사자에서 재배 및 수확, 수집 또는 채집된 과일, 꽃, 채소, 나무, 해초, 균류, 그리고 살아있는 식물을 포함한 식물 및 식물성 상품

○ 당사자에서 출생하고 사육된 살아있는 동물

○ 당사자에서 사육된 살아있는 동물로부터 획득한 상품

○ 당사자에서 수행된 수렵, 덫사냥, 어로, 농작, 양식, 채집 또는 포획에 의하여 획득된 상품

○ 당사자의 토양, 수역, 해저 또는 해저 하부의 하층토로부터 추출되거나 채취된 상기 호까지에 포함되지 않는 광물 및 그 밖의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물질

17) 「RCEP 협정」 제2.6조
18) 「RCEP 협정」 제3.3조

○ 국제법에 따라 당사자들 및 비당사자들 영해 밖의 수역, 해저 또는 해저 하부의 하층토에서 그 당사자의 선박에 의하여 획득된 어로 상품 및 그 밖의 해양생물, 그리고 그 당사자 또는 그 당사자의 인에 의하여 획득된 그 밖의 상품
- 어떠한 당사자 또는 비당사자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획득된 어로 상품 및 그 밖의 해양생물의 경우 그 당사자 또는 그 당사자의 인인 그러한 배타적 경제수역을 개발할 권리가 있어야 함
- 그 밖의 상품의 경우 그 당사자 또는 그 당사자의 인은 국제법에 따라 그러한 해저 또는 해저 하부의 하층토를 개발할 권리가 있어야 함

○ 그 당사자의 선박에 의하여 국제법에 따른 공해로부터 획득된 어로 상품 및 그 밖의 해양생물

○ 그 당사자의 가공선박에서 어로 상품 등을 사용하여 가공되거나 만들어진 상품

○ 다음의 상품
- 당사자에서의 생산 또는 소비로부터 얻어진 폐기물 및 부스러기로 처분, 원재료의 회수 또는 재활용 목적으로만 적합한 것
- 당사자에서 수집된 중고품으로 처분, 원재료의 회수 또는 재활용 목적으로만 적합한 것

○ 상기 호에 언급된 상품 또는 그 파생품만으로 그 당사자에서 획득되거나 생산된 물품

□ 하나의 당사자에서 완전히 획득되거나 생산된 물품은 다른 원산지결정기준 기본원칙의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됨

○ 원재료 및 상품의 획득과 생산이 하나의 국가에서 이루어진 경우 완전생산되었다는 그 자체로 원산지결정기준의 기본원칙을 충족함

○ 「RCEP 협정」에서는 원산지결정기준의 기본원칙인 최소공정 및 가공이 비원산지재료에 한하여 적용되므로[19] 완전생산물품은 이를 충족할 필요가 없음

19) 「RCEP 협정」 제3.6조

□ 또한 완전생산물품은 물품의 획득 및 생산에 하나의 당사자가 관여함에 따라 해당 당사자가 원산지국가이므로 관세차별조항을 적용할 필요가 없음

○ 완전생산물품은 원산지규정에 따라 원산지지위가 결정되면서 원산지국가 또한 결정되므로 관세차별조항에서 원산지국가 결정 요건을 별도로 설정하지 않음

□ 따라서 「RCEP 협정」 제2.6조 제2항에서도 완전생산물품의 RCEP 원산지국가는 제3.2조에 따라 상품의 원산지지위를 획득한 당사자라고 규정하고 있음

○ 즉 원산지규정을 충족하는 당사자가 원산지국가이며, 원산지국가를 결정하기 위한 별도의 조건을 명시하지 않음

2) 원산지재료로만 생산된 물품

□ 원산지재료로만 생산된 물품이란 원산지규정에 따른 원산지자격을 갖춘 원재료·구성물품·부분품 또는 부속품을 사용하여 생산된 물품을 말함

○ 생산이란 재배, 채굴, 수확, 농작, 사육, 번식, 추출, 채집, 수집, 포획, 어로, 양식, 덫사냥, 수렵, 제조, 생산, 가공 또는 조립을 포함한 상품 획득의 방법을 말함[20]

□ 원산지재료는 「RCEP 협정」의 원산지규정에 따라 원산지가 수출당사자 또는 다른 당사자로 인정되는 재료 즉 RCEP 역내산재료를 말함

○ 원산지재료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원산지결정기준의 기본원칙을 충족하거나 보충·특례기준을 적용하여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해야 함

□ 다른 당사자가 원산지인 물품이 수출당사자에서 다른 상품 또는 재료의 생산에 재료로 사용되는 경우 해당 물품은 수출당사국을 원산지로 하는 원산지재료임[21]

○ 즉 다른 당사자에서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한 물품에 대해 수출당사자에서 작업 또는 가공이 발생한 경우 원산지가 누적됨

---

20) 「RCEP 협정」 제3.1조 타목
21) 「RCEP 협정」 제3.4조

□ 또한 비원산지재료가 원산지요건을 충족하는 추가 생산을 거치는 경우 그 재료는 그 후에 생산된 상품의 원산지지위를 결정할 때 원산지상품으로 취급됨[22)]

○ 이 경우 그 재료가 그 상품의 생산자에 의하여 생산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음

□ 다시 말해서 원산지재료의 생산에 사용된 비원산지재료는 해당 원산지재료로 생산된 물품의 원산지판정 시 고려되지 않고, 원산지재료에 포함됨

○ 이와 같이 비원산지재료를 사용하여 생산된 원산지상품이 다른 상품의 재료가 되는 경우 해당 원산지재료를 중간재라고 함

□ 이러한 규정들을 통하여 원산지재료로 인정된 물품만을 재료로 사용하여 생산된 물품은 완전생산물품과 마찬가지로 해당 요건의 충족만으로 원산지지위를 획득함

○ 즉 다른 원산지결정기준 기본원칙의 충족 여부와 관련 없이 원산지상품으로서 「RCEP 협정」에 따른 특혜대우 대상이 됨

○ 「RCEP 협정」에서는 원산지결정기준의 기본원칙인 최소공정 및 가공은 비원산지재료에 대하여 수행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음[23)]

□ 그러나 원산지재료라도 그 재료에 다른 당사자나 역외에서 생산된 재료가 포함될 수 있다는 점에서 원산지재료로만 생산된 물품은 완전생산물품과 구분됨

○ 완전생산물품은 모든 재료의 획득·모든 생산과정이 하나의 당사자에서 이루어진 상품으로 「RCEP 협정」에서는 원산지재료로만 생산된 물품과 구분하고 있음

□ 이와 같이 원산지재료로만 생산된 물품은 둘 이상의 국가가 물품의 생산에 관여하므로 원산지규정의 충족만으로 원산지국가가 결정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함

○ 수출당사자의 원산지재료와 다른 당사자의 원산지재료를 사용하여 생산된 원산지상품은 수출당사자와 다른 당사자 중 원산지국가를 결정해야 함

○ 반면 비원산지재료가 통합된 원산지재료와 수출당사자가 원산지인 재료로 생산된

22) 「RCEP 협정」 제3.12조
23) 「RCEP 협정」 제3.6조

원산지상품은 수출당사자가 원산지국가임[24]

□ 따라서 「RCEP 협정」에서는 관세차별조항에서 원산지재료로만 생산된 물품의 원산지국가를 결정하기 위한 요건을 규정하고 있음

○ 관세차별조항은 원산지상품이 둘 이상의 당사자에서 획득·생산된 재료로 만들어진 경우 원산지국가를 결정하기 위해 적용됨

3) 불완전생산물품

□ 「RCEP 협정」은 비원산지재료를 사용하여 당사자에서 생산된 상품이 품목별 원산지규정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원산지상품으로 취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음[25]

○ 품목별 원산지규정은 부속서 3-가에서 정하고 있으며, RCEP 당사자 공동규정으로 모든 당사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됨

□ 비원산지재료를 사용하여 생산된 물품은 완전생산물품, 원산지재료로 생산된 물품과는 달리 품목별 원산지규정을 충족하여도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되지 않음

○ 원산지상품은 역내에서 물품의 실질적인 성질이 변경될 정도의 공정이 수행되어야 하지만 단순한 공정만으로 품목별 원산지규정을 충족하는 경우가 발생함

○ 따라서 품목별 원산지규정을 충족하더라도 비원산지재료의 실질이 변경되기에 충분한 정도의 공정이 이루어졌음을 확인하는 별도의 규정이 필요함

□ 「RCEP 협정」에서는 비원산지재료가 상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경우 비원산지재료에 대하여 최소공정 및 가공을 초과하는 공정이나 가공이 수행되기를 요구함[26]

○ 다음의 공정이 비원산지재료에 수행되는 경우 원산지상품의 지위를 부여하기에 불충분한 작업 또는 가공으로 여겨짐

---

24) 비원산지재료를 사용하지 않고 수출당사국에서 완전생산된 원재료들로만 생산된 상품은 완전생산물품임

25) 「RCEP 협정」 제3.2조 다목

26) 「RCEP 협정」 제3.6조

- 운송 또는 보관 목적상 상품이 양호한 상태로 유지되도록 보장하기 위한 보존 공정
- 운송 또는 판매를 위한 상품의 포장 또는 전시
- 감별, 체질, 선별, 분류, 연마, 절단, 쪼개기, 분쇄, 구부리기, 감기 또는 풀기로 구성되는 단순한 가공
- 상품 또는 그 상품의 포장에 마크, 라벨, 로고 또는 그 밖의 유사한 구별표시의 부착 또는 인쇄
- 상품의 특성을 실질적으로 변경하지 않으면서 물이나 다른 물질로 단순 희석
- 제품의 부품으로의 분해
- 동물의 도살
- 단순한 페인팅 및 광택 공정
- 단순 탈피, 씨 제거 또는 탈각
- 다른 종류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상품의 단순한 혼합
- 상기에 언급된 둘 이상의 공정의 조합

□ 불완전생산물품이 품목별 원산지규정과 최소공정 및 가공을 충족하여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되는 경우 원산지국가는 해당 요건을 충족한 국가임

○ 품목별 원산지규정과 최소공정 및 가공규정을 충족하여 충분공정을 수행한 국가에서 물품의 실질적인 변형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원산지국가로 인정됨

□ 따라서 불완전생산물품 또한 원산지규정으로 원산지국가가 결정되므로 관세차별조항을 통하여 원산지국가를 결정할 필요가 없음

○ 「RCEP 협정」 제2.6조 제2항은 불완전생산물품의 RCEP 원산지국가를 제3.2조에 따라 상품의 원산지지위를 획득한 당사자로 규정하고 별도의 조건을 명시하지 않음

나. 관세차별조항

□ 완전생산물품, 불완전생산물품은 원산지규정에 따라 생산국을 원산지국가로 인정하지만 원산지재료로만 생산된 상품은 추가기준을 충족해야 함

○ 「RCEP 협정」은 원산지상품 규정에 따라 구분되는 원산지상품 중 원산지재료로 생산된 물품에 대하여 원산지국가를 결정하기 위한 별도의 조건을 명시함

□ 상품이 당사자에서 원산지재료로만 생산된 경우 원산지상품에 대하여 최소공정 외의 생산 공정이 수출당사자에서 발생했다면 RCEP 원산지국가는 수출당사자임[27)]

○ 최소공정은 아래에 규정된 규정임[28)]

- 운송 또는 보관 목적상 상품이 양호한 상태로 유지되도록 보장하기 위한 보존 공정
- 운송 또는 판매를 위한 상품의 포장 또는 전시
- 감별, 체질, 선별, 분류, 연마, 절단, 쪼개기, 분쇄, 구부리기, 감기 또는 풀기로 구성되는 단순한 공정
- 상품 또는 그 상품의 포장에 마크, 라벨, 로고 또는 그 밖의 유사한 구별표시의 부착 또는 인쇄
- 상품의 특성을 실질적으로 변경하지 않는 물이나 다른 물질로 단순 희석
- 제품의 부품으로의 분해
- 동물의 도살
- 단순한 페인팅 및 광택 공정
- 단순 탈피, 씨 제거 또는 탈각
- 다른 종류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상품의 단순한 혼합
- 상기에 언급된 둘 이상의 공정의 조합

□ 한편 「RCEP 협정」은 특정 물품에 대하여 원산지상품의 유형과 관련 없이 추가요건을

---

27) 「RCEP 협정」 제2.6조 제2항
28) 「RCEP 협정」 제2.6조 제5항

충족한 당사자를 원산지국가로 인정하는 요건을 별도로 정하고 있음

○ 따라서 원산지재료로 생산된 물품, 불완전생산물품이 해당물품에 포함되는 경우 추가요건을 충족해야 함

○ 다만 완전생산물품은 완전생산요건을 충족한다면 추가요건 또한 충족하기 때문에 해당 요건을 적용할 필요가 없음

□ 수입당사자가 관세양허표에 포함된 부록에 적시한 원산지상품에 대하여 그 부록에 명시된 추가요건을 충족한 경우 RCEP 원산지국가는 수출당사자임[29)]

○ 추가요건이란 수출당사자는 그 원산지상품의 생산에서 필요한 변경을 가하여 원산지상품 총가액의 20퍼센트 이상이 추가된 당사자일 것이라는 요건을 말함[30)]

- 원산지상품의 총가액을 계산하는 목적상, 누적규정에도 불구하고, 다른 당사자 또는 당사자들에서 생산된 상품과 재료는 그것의 원산지지위와 관계없이 비원산지로 여겨짐

□ 관세양허표 부록에 포함된 원산지상품 즉, 민간품목에 추가된 가치의 계산은 역내가치포함비율의 산정 규정에 따름[31)]

○ 상품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은 다음의 공식 중 어느 하나를 사용하여 산정됨[32)]

- 간접법/공제법: 역내가치포함비율(RVC) = 본선인도가격(FOB) - 비원산지재료가치(VNM) / 본선인도가격(FOB) × 100

---

29) 「RCEP 협정」 제2.6조 제3항

30) 「RCEP 협정」 부속서 1 인도네시아 제2.6조(관세 차별) 제3항에 관한 부록 제1호 가목, 필리핀 제2.6조(관세 차별) 제3항에 관한 부록 제1호 가목, 태국 제2.6조(관세 차별) 제3항에 관한 부록 제1호 가목, 베트남 제2.6조(관세 차별) 제3항에 관한 부록 제1호 가목, 중국 제2.6조(관세 차별) 제3항에 관한 부록 제1호 가목, 일본 제2.6조(관세 차별) 제3항에 관한 부록 제1호 가목, 한국 제2.6조(관세 차별) 제3항에 관한 부록 제1호 가목

31) 「RCEP 협정」 부속서 1 인도네시아 제2.6조(관세 차별) 제3항에 관한 부록 제1호 가목, 필리핀 제2.6조(관세 차별) 제3항에 관한 부록 제1호 가목, 태국 제2.6조(관세 차별) 제3항에 관한 부록 제1호 가목, 베트남 제2.6조(관세 차별) 제3항에 관한 부록 제1호 가목, 중국 제2.6조(관세 차별) 제3항에 관한 부록 제1호 가목, 일본 제2.6조(관세 차별) 제3항에 관한 부록 제1호 가목, 한국 제2.6조(관세 차별) 제3항에 관한 부록 제1호 가목

32) 「RCEP 협정」 제3.5조

- 직접법/집적법: 원재료재료가치(VOM) + 직접노무비 + 직접경비 + 이윤 + 그 밖의 비용 / 본선인도가격(FOB) × 100

□ 원산지재료 생산물품, 민감품목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RCEP 원산지국가는 수출당사자에서 상품의 생산에 사용된 원산지재료에 최고 가치를 기여한 당사자임[33]

○ 이 경우 그 원산지상품은 수출당사자가 아닌 RCEP 원산지국가의 원산지상품에 적용 가능한 특혜관세 대우 자격을 가짐

□ 이러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RCEP 협정」에서는 수입당사자는 수입자에게 다음 중 하나로 특혜관세 대우를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규정함[34]

○ 수입당사자가 그러한 상품의 생산에 사용된 원산지재료에 기여한 당사자들로부터의 동일한 원산지상품에 적용하는 관세 중 최고 세율
- 그 수입자가 그러한 신청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함
- 원산지재료는 최종상품의 원산지지위에 대한 신청에서 고려된 그러한 원산지재료만을 지칭함

○ 수입당사자가 당사자들로부터의 동일한 원산지상품에 적용하는 관세 중 최고 세율

33) 「RCEP 협정」 제2.6조 제4항
34) 「RCEP 협정」 제2.6조 제6항

Ⅲ. 관세차별조항 적용상 쟁점 및 유의사항

1. 관세차별조항의 적용범위

가. 쟁점사항

□ 관세차별조항은 원산지규정에 따라 RCEP 원산지상품의 지위를 획득한 물품의 원산지국가를 결정하기 위한 규정임[35]

○ RCEP은 다자간 협정으로 물품의 생산에 여러 당사자가 기여할 수 있으며, 이들 당사자 중 어떤 당사자를 원산지국가로 볼지 관세차별조항으로 결정함

□ 우리나라가 체결한 기존의 FTA는 원산지규정에 따라 원산지국가도 결정되는 반면 RCEP에서는 원산지국가를 결정하는 별도의 규정을 마련하고 있는 것임

○ 기존의 FTA는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된 물품의 원산지는 원산지규정을 충족한 국가로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는 「RCEP 협정」이 동일한 품목에 대하여 원산지국가별로 관세대우를 다르게 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기 때문임

○ 일부 RCEP 당사자는 각 상대국별로 별도의 관세양허표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원산지국가에 따라 적용되는 관세대우가 달라짐

---

35) 관세차별 민감품목은 정확한 원산지국가를 결정하기 위한 규정이 아니고, 원산지국가의 자격을 강화하기 위해 추가로 요건을 정한 품목이므로 본 장에서는 논의하지 않음

□ 이와 같이 RCEP 당사자별 관세대우를 다르게 정하고 있는 품목에 대하여 적용할 관세율을 정하기 위하여 원산지국가를 결정하는 관세차별조항을 마련하고 있음

○ 수입당사자는 관세차별조항에 따라 결정된 원산지국가에 대한 관세양허표에 따라 원산지상품에 관세율을 적용함

□ 이러한 상황에서 관세차별조항은 원산지상품에 대하여 상대국별 관세율을 다르게 정하고 있는 품목에 대하여만 적용하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즉 관세차별조항은 관세차별품목의 관세대우를 결정하기 위한 규정이므로 관세차별품목에 한하여 적용되는지 검토해야 함

- 「RCEP 협정」에서는 RCEP 원산지국가를 결정하는 기준을 '관세차별'이라는 조항으로 규정하고 있음

□ 관세차별조항이 관세차별품목에 한하여 적용된다면 RCEP 당사자에 공통관세율이 적용되는 품목은 원산지규정에 따라 원산지가 결정됨

○ 즉 관세차별품목은 관세차별조항으로 원산지국가를 결정하고 관세차별품목이 아닌 물품은 일반적인 FTA와 마찬가지로 원산지규정으로 원산지국가를 결정함

□ 이 경우 관세차별조항에서 추가요건을 정하고 있는 원산지재료 생산물품은 수입당사자의 관세차별 운영 여부에 따라 원산지국가가 달라질 수 있음

○ 수입당사자가 원산지국가별 관세양허를 다르게 하고 있는지에 따라 원산지국가를 결정하기 위한 규정이 달라지므로 원산지국가 또한 달라질 수 있음

□ 따라서 관세차별조항이 모든 원산지상품에 대해 적용되는 것인지 관세차별품목에 대해 적용되는 것인지 그 적용범위를 살펴보아야 함

○ 관세차별품목 여부에 따라 원산지국가를 결정하는 규정이 달라짐으로써 무역왜곡이나 관세회피 현상이 발생하는지 여부를 검토해야 함

○ 또한 「RCEP 협정」의 관련 규정이 관세차별조항의 적용범위와 관련하여 어떻게 해석될 수 있는지 검토해야 함

□ 우선 관세차별품목 여부에 따라 원산지국가를 결정하는 규정이 달라지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나 문제를 예상해 볼 수 있음

○ 이 경우 「RCEP 협정」에서 상대국별 관세양허를 다르게 정하고 있는 의도가 훼손된다면 관세차별조항의 적용범위의 해석이 잘못된 것으로 볼 수 있음

□ 수출국 E에서 원산지재료 a와 b에 최소공정을 수행하여 원산지상품 e를 생산한 후 I국으로 수출하는 경우 e의 원산지국가는 I국의 관세차별 여부에 따라 달라짐

○ 수출당사자 E, 수입당사자 I, 원재료 원산지국가 A, B는 모두 RCEP 당사자임

○ e는 원산지재료로 생산된 물품이므로 비원산지재료에 대해 적용되는 「RCEP 협정」 제3.6조의 최소공정 및 가공규정과 관계없이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됨

□ I국이 모든 RCEP 당사자에게 공통의 관세율을 적용한다면 원산지규정에 따라 상품 e의 원산지국가는 수출당사자인 E가 됨

○ 원산지재료인 a와 b는 e의 생산에 재료로 사용되므로 누적이 적용되어 a와 b의 원산지는 E국이며 이에 따라 e의 원산지국가는 E임

□ 이 경우 I국은 모든 RCEP 당사자에 대하여 동일한 관세대우를 하고 있으므로 관세차별조항의 적용 여부에 따라 원산지국가가 달라져도 관세율과는 관계가 없음

○ 만약 관세차별조항에 따른 원산지국가의 결정이 관세차별품목이 아닌 물품에 대하여 적용된다면 e의 원산지국가는 A임

○ 그러나 I국은 A국과 E국에 대한 관세율이 동일하므로 원산지국가를 결정하는 규정에 따라 상품 e에 적용되는 관세율이 달라지지 않음

□ 반면 I국이 RCEP 당사자별 관세율을 별도로 정하고 있는 경우 관세차별조항이 적용되어 상품 e의 원산지국가는 원재료가치 최대기여국인 A국임

○ 원산지재료로만 생산된 e는 수출당사자에서 최소공정만 수행되었으므로 가장 비싼 원재료 a의 원산지국가인 A가 상품 e의 원산지국가로 결정됨

□ 관세차별품목은 관세차별조항의 적용범위에 따라 원산지국가가 다르게 결정되지 않으므로 이러한 경우 또한 관세회피 등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음

○ 관세차별조항의 적용범위는 관세차별품목이 아닌 물품에 관세차별조항을 적용하여 원산지국가를 결정할 수 있느냐의 문제임

[그림 Ⅲ-1] 관세차별조항 적용 여부에 따른 원산지국가 결정 예시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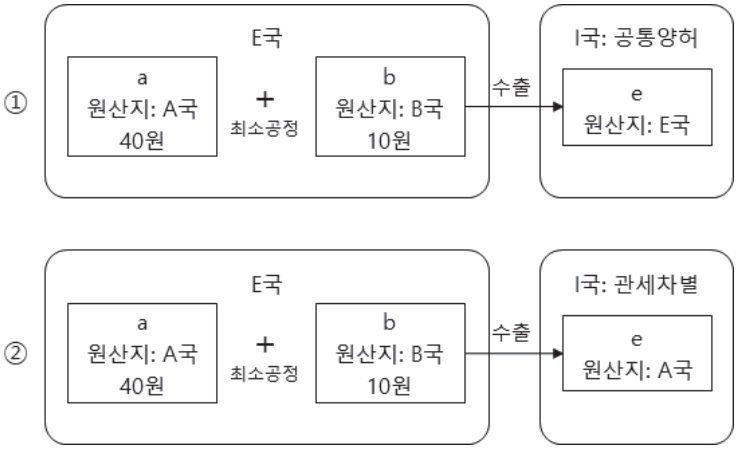

자료: 저자 작성

□ 그러나 이렇게 생산·수출된 상품 e가 관세차별을 운영하는 F로 수출되는 경우 I국에서 결정된 원산지국가에 따라 F국이 적용하는 관세율이 달라질 수 있음

○ 최종 수입당사자인 F도 RCEP 당사자이며, I국에서는 다음을 제외한[36] 최소공정만이 수행됨

- 재포장 또는 하역, 재선적, 보관, 탁송물의 분리나 수입당사자의 법, 규정, 절차, 행정적 결정 및 정책에 따라 요구되는 경우로 한정한 라벨링 같은 물류 활동
- 상품을 양호한 상태로 보존하거나 상품을 수입당사자에 운송하기 위하여 필요한 그 밖의 모든 공정

36) 제외되는 공정만을 수행한 경우 중간경유국에서는 최초발급된 원산지 증명서를 근거로 연결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해야 함(「RCEP 협정」 제3.19조)

□ e의 원산지국가가 원산지규정에 따라 E국으로 결정된 경우 F국으로 수출되는 e′의 원산지국가는 E이므로 F국이 E국에 양허한 관세율이 적용됨

○ e′는 원산지재료 e로 생산된 물품으로 I국에서 최소공정만이 수행됐으므로 e의 원산지국가인 E국이 e′의 원산지국가로 결정됨

□ 반면 관세차별조항이 적용되어 e의 원산지국가가 A국인 경우 e′의 원산지국가 또한 A국이 되며, F국이 A국에 대하여 적용하는 관세대우에 대한 자격을 가짐

○ 이 경우 역시 e′는 원산지재료 e로 생산된 물품으로 I국에서 최소공정만이 수행됐으므로 e의 원산지국가인 A국이 e′의 원산지국가로 결정됨

[그림 Ⅲ-2] 관세차별조항 적용 여부에 따른 원산지국가 결정 예시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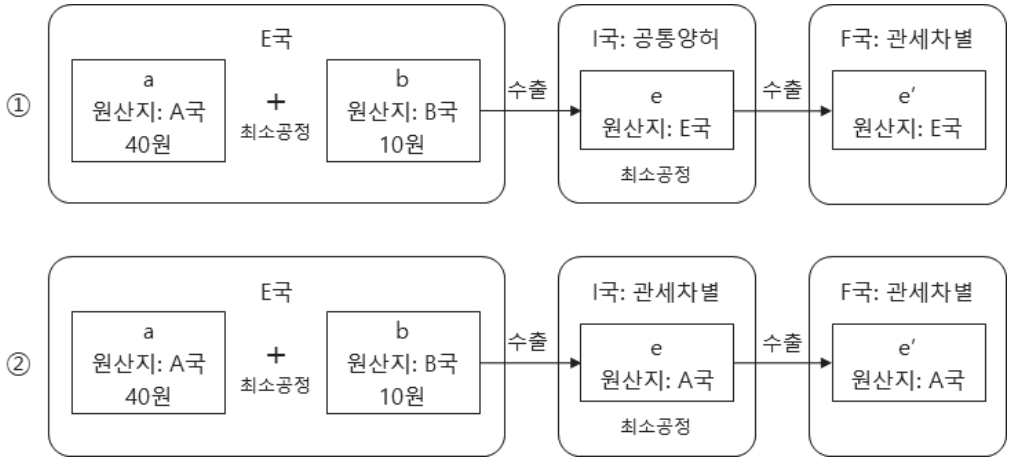

자료: 저자 작성

□ 이와 같이 관세차별품목 해당 여부에 따라 관세차별조항의 적용 여부가 달라진다면 동일한 물품에 대한 원산지국가 결정과 그에 따른 관세율이 달라질 수 있음

○ 반대로 관세차별품목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원산지상품에 대하여 관세차별조항을 적용하는 경우 동일한 물품에 대해 동일한 원산지국가가 결정됨

□ 더욱이 해당 예시에서 F국이 A국에게 E국보다 고세율로 관세를 양허하고 있다면 공

통양허를 하고 있는 E국을 이용하여 저세율의 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음

○ 이는 관세회피수단으로 활용되어 무역굴절효과가 발생하게 되며, F국은 상대국별로 관세대우를 다르게 정하고 있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음

□ 이와 같이 관세차별조항의 적용범위를 한정하는 경우 「RCEP 협정」의 관세양허방식의 목적에 위배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음

○ 특히 「RCEP 협정」은 당사자 간 직접운송원칙을 완화하고 연결원산지증명서 발급을 허용하면서 역내국 경유가 가능하므로 관세회피에 이용될 수 있음

□ 따라서 관세차별조항은 관세차별품목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원산지상품의 RCEP 원산지국가를 결정하는 데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임

○ 관세차별조항을 모든 원산지상품에 대해 적용한다면 역내간 관세차이를 이용한 우회수출이 발생하지 않음

○ 또한 국가와 품목을 구별하여 관세양허를 다르게 정하고 있는 당사자의 정책적 목적과 부합하게 정확한 원산지국가 판정이 이루어질 수 있음

□ 다음으로 「RCEP 협정」에서는 관세차별조항의 적용범위와 관련하여 어떻게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지 살펴보아야 함

○ 「RCEP 협정」은 관세차별조항과 원산지증명서 작성방법 등에서 원산지국가와 관련하여 언급하고 있음

□ 「RCEP 협정」 제2.6조 관세차별조항은 제1항에서 수입당사자가 RCEP 원산지국가인 수출당사자에 양허한 관세대우가 관세차별품목에 적용된다고 규정함

○ 즉 수입당사자가 상대 당사자마다 관세양허표를 마련하고 있는 경우 원산지상품의 원산지국가에 따라 관세대우가 정해짐

□ 제2항에서는 RCEP 원산지국가를 규정하면서 ‘원산지상품’의 원산지국가를 결정하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음

○ 제1항에서는 관세차별품목의 관세대우가 원산지국가에 따라 결정됨을 규정하고 제2항에서 원산지국가가 어떻게 결정되는지 설명하고 있음

□ 이러한 규정을 볼 때 관세차별조항에 따른 원산지결정은 관세차별품목에 한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원산지상품의 원산지를 결정하는 때 적용된다고 볼 수 있음

○ 「RCEP 협정」 제2.6조 제2항은 완전생산물품과 불완전생산물품은 원산지규정에 따라 원산지를 결정하고 원산지재료 생산물품은 최소공정이라는 요건을 추가하고 있음

□ 또한 「RCEP 협정」은 원산지증명서·신고서는 최소정보요건에 따라 작성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37], 최소정보에는 제2.6조에 언급된 원산지국가가 포함됨[38]

○ 최소정보요건에는 원산지증명서·신고서가 포함해야 할 정보를 열거하고 있으며, 원산지국가는 특정경우나 품목에 한하여 작성해야 할 정보가 아님

- 최소정보요건에서는 생산자의 명세는 아는 경우, 본선인도가격은 부가가치기준이 사용된 경우에 한하여 원산지증명서·신고서에 작성하도록 하고 있음

□ 이는 모든 원산지상품의 원산지국가를 원산지증명서·신고서에 기재해야하며, 원산지국가는 「RCEP 협정」제2.6조에 따라 결정된다는 것을 의미함

○ 즉 원산지증명서·신고서에 원산지국가를 반드시 포함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관세차별 여부와 관계없이 제2.6조에 따라 원산지국가가 결정됨을 명확히 함

□ 이뿐만 아니라 RCEP 사무국이 원산지국가 결정절차를 설명하는 자료 또한 관세차별조항에 따른 원산지국가 결정이 관세차별품목에 한한 것이 아님을 보여줌

○ 원산지증명서 서식 및 작성방법과 RCEP 이행 가이드라인에서 원산지국가 기재요령과 결정절차를 설명하고 있음

---

37) 「RCEP 협정」 제3.16조, 제3.18조
38) 「RCEP 협정」 부속서 3-나

□ RCEP 원산지증명서 작성방법은 원산지증명 대상물품의 상황별 원산지국가 기재 요령을 설명하면서 대상물품의 관세차별품목 해당 여부는 구분하지 않고 있음

○ 다만 민감품목은 원산지규정이나 원산지재료생산물품에 대한 관세차별조항의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추가로 요건을 갖추어야 하므로 이는 구분하고 있음

□ 이는 원산지국가를 결정하는 때에 관세차별품목 해당 여부를 구분하지 않고, 모든 원산지상품에 대해 관세차별조항에 따라 원산지국가를 결정함을 나타냄

○ 원산지국가는 민감품목 여부, 원산지상품의 유형에 따라 구분되어 적용되는 관세차별조항에 의해 결정됨

[그림 Ⅲ-3] 원산지증명서 원산지국가 기재요령

작 성 방 법

11. 제10란에는 각 상품에 대한 원산지 결정 기준을 아래 표에 정한 방법으로 적습니다.

원산지 결정 기준	기재 문구
(가) 협정 제3장 제3.2(가)조를 충족하는 완전획득 또는 생산된 상품	WO
(나) 협정 제3장 제3.2(나)조를 충족하는 원산지 재료로만 생산된 상품	PE
(다) 협정 부속서 3-가에 규정된 품목별 요건을 충족하는 비원산지 재료를 사용하여 생산된 상품	
- 세번변경	CTC
- 역내가치포함비율	RVC
- 화학반응	CR
(라) 협정 제3장 제3.4조를 충족하는 상품	ACU
(마) 협정 제3장 제3.7조를 충족하는 상품	DMI

자료: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의5서식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제3.17조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

□ 이와 유사하게 RCEP 이행 가이드라인에서도 원산지국가를 결정하는 절차에서 관세차별품목 여부는 확인하지 않고 있음

○ 원산지국가 결정절차 또한 대상물품이 수입당사자의 민감품목인지 여부를 먼저 확인하고, 원산지상품 유형에 따라 원산지국가 결정기준을 적용하도록 함

[그림 Ⅲ-4] RCEP 원산지국가 결정 순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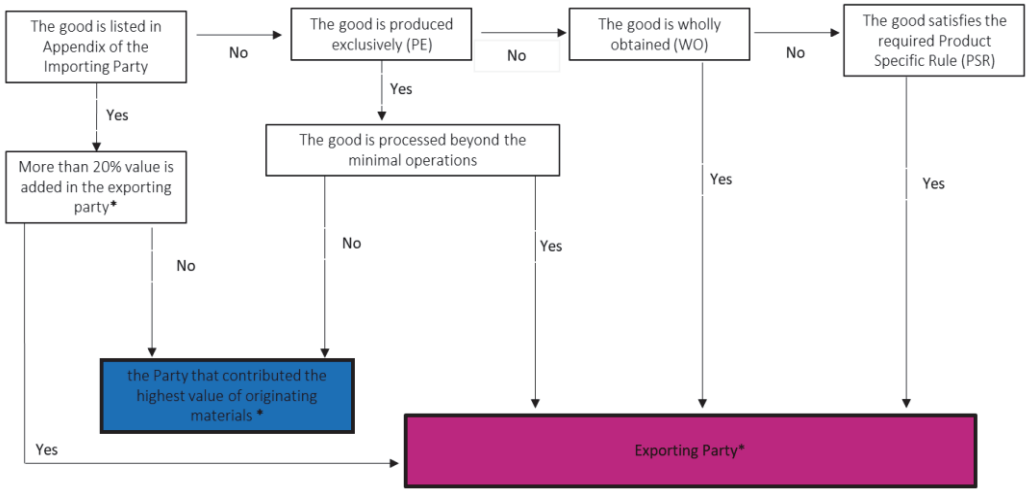

자료: RCEP Secretariat, "Implementing Guidelines for the Rules of Origin of the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2022. 11. 4., p. 3

□ 즉 RCEP 원산지증명서의 작성방법과 RCEP 이행 가이드라인에서는 모든 원산지상품에 대해 관세차별조항에 따라 원산지국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음

○ 민감품목은 추가요건을 충족한 국가를 원산지국가로 결정하고 그 외의 품목은 원산지상품 유형에 따라 정해진 기준으로 원산지국가를 보도록 함

□ 한편 우리나라도 「RCEP 발효에 따른 관세행정 운영지침」에서 원산지증명서의 작성방법과 이행 가이드라인에 따른 원산지국가 결정 순서를 설명하고 있음

○ 원산지상품의 원산지국가를 결정하는 경우 원산지증명서의 작성방법과 이행 가이드라인의 원산지국가 결정절차를 따르도록 하고자 함

□ 「RCEP 발효에 따른 관세행정 운영지침」의 원산지국가 결정 순서는 관세차별이 적용되지 않는 품목도 수출당사자와 원산지국가가 다르게 결정된다고 명시함[39]

○ 관세차별조항에 따라 원산지국가를 결정해야만 공통양허품목의 원산지국가가 수출

39) 관세청, 「RCEP 발효에 따른 관세행정 운영지침」, 2022. 1., p. 21

당사자가 아닌 당사자로 결정될 수 있음

- 반대로 공통양허품목의 원산지국가가 원산지규정에 따라 결정된다면 수출당사자가 원산지국가가 됨

□ 또한 RCEP 이행 가이드라인의 원산지국가 결정절차를 따르면 수입당사자의 관세율표를 비교할 필요 없이 원산지국가를 판단할 수 있다고 명시함[40)]

○ 관세차별품목에 대해서만 관세차별조항에 따른 원산지국가 판단을 해야 한다면 수입당사자의 관세율표를 통해 관세차별품목 해당 여부를 확인해야 함

○ 그러나 관세차별품목 해당 여부와 관계없이 원산지국가가 결정되므로 수입당사자의 관세율표를 확인할 필요가 없는 것임

□ 이러한 운영지침을 통해 우리나라도 공통양허품목의 원산지국가가 관세차별조항에 의해 결정된다고 보고 있음

○ 즉 모든 원산지상품의 원산지국가 결정은 원산지규정이 아닌 관세차별조항에 따라 이루어짐을 명시하고 있음

□ 이와 같이 원산지국가 결정 예시나 관련 규정을 살펴보았을 때 관세차별조항에 따른 원산지국가 결정은 원산지상품에 대하여 적용해야 함

○ 따라서 RCEP 원산지상품의 여부는 원산지규정에 따르며, 원산지지위를 획득한 상품의 원산지국가는 관세차별조항에 따라 결정해야 함

---

40) 관세청(2022), p. 21

[그림 Ⅲ-5] RCEP 원산지규정과 관세차별조항의 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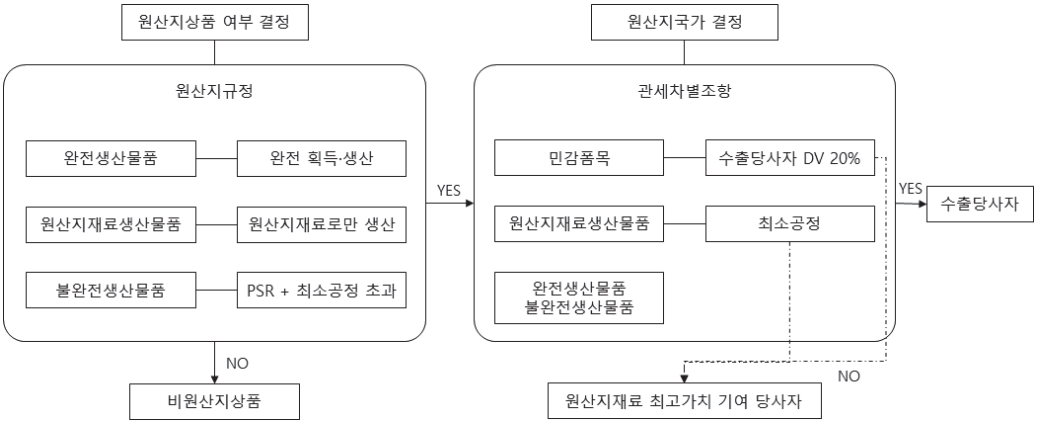

주: 1) PSR(Product Specific Rule): 품목별 원산지규정
2) DV(Domestic Value addition): 국내부가가치
자료: 저자 작성

나. 유의사항

□ RCEP은 기존의 다른 FTA와는 달리 원산지상품의 원산지국가를 결정하는 별도의 절차를 관세차별조항에 마련하고 있음

○ 기존의 FTA는 원산지규정에 따라 원산지지위와 원산지국가가 결정되지만 RCEP은 원산지지위는 원산지규정으로 원산지국가는 관세차별조항으로 결정됨

□ RCEP 원산지국가 결정은 원산지상품에 대해 적용되지만 「RCEP 협정」에서는 원산지국가 결정기준을 '관세차별'규정에 포함시키고 있음

○ 관세차별품목의 특혜관세 대우가 원산지국가에 따라 정해짐을 규정하면서 해당 규정에 원산지국가를 결정하는 방법을 정하고 있음

□ 이러한 이유로 RCEP 협정 설명자료에서 원산지국가 결정방법, 사례 등을 관세차별품목에 한하여 소개하고 있음

○ 「RCEP 협정」에서 RCEP 원산지국가 결정기준은 원산지규정이 아닌 관세차별조항에 규정되어 있어 관세차별에 대한 설명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음

□ 관세청의 「RCEP 발효에 따른 관세행정 운영지침」에서도 '관세차별' 항목에 원산지국가 결정방법을 포함하고 있음

○ 관세차별에 대한 설명에서 관세차별의 대상과 관세차별품목의 원산지국가 결정방법에 대한 지침을 명시하고 있음

□ 운영지침에서는 관세차별의 대상이 원산지상품이라고 명시하면서도 하위 목록에는 관세차별 일반품목과 민감품목만을 열거하고 있음

○ 관세차별품목이 아닌 공통양허품목은 관세차별조항의 대상으로 열거하지 않고 있음

[그림 Ⅲ-6] 「RCEP 발효에 따른 관세행정 운영지침」상 관세차별 적용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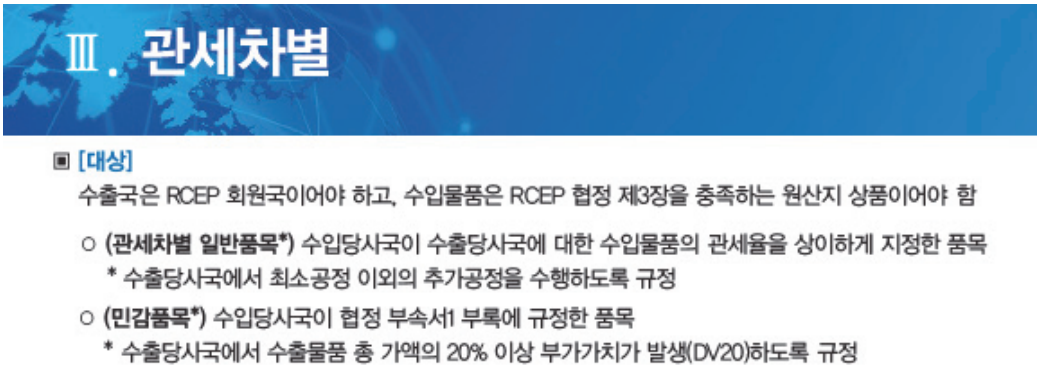

자료: 관세청(2022), p. 18

□ 또한 원산지국가 결정을 '관세차별물품의 원산지국가 결정방법'이라는 항목에서 설명하고, 원산지국가 결정 단계에서 관세차별 일반품목 여부를 확인하도록 함

○ 원산지국가 결정방법을 관세차별품목에 대한 것으로 설명하고 관세차별품목이 아닌 품목에 대한 원산지국가 결정에 대해서는 별도로 명시하지 않고 있음

○ 또한 관세차별 일반품목 여부에 따라 원산지국가 결정기준이 달라지지 않지만 이를 원산지국가 결정 단계에 포함하고 있음

- 민감품목이 아닌 원산지상품은 공통양허품목인지 관세차별 일반품목인지의 구분 없이 원산지유형에 따라 요구되는 기준에 따라 원산지국가를 결정해야 함

[그림 Ⅲ-7] 「RCEP 발효에 따른 관세행정 운영지침」상 원산지국가 결정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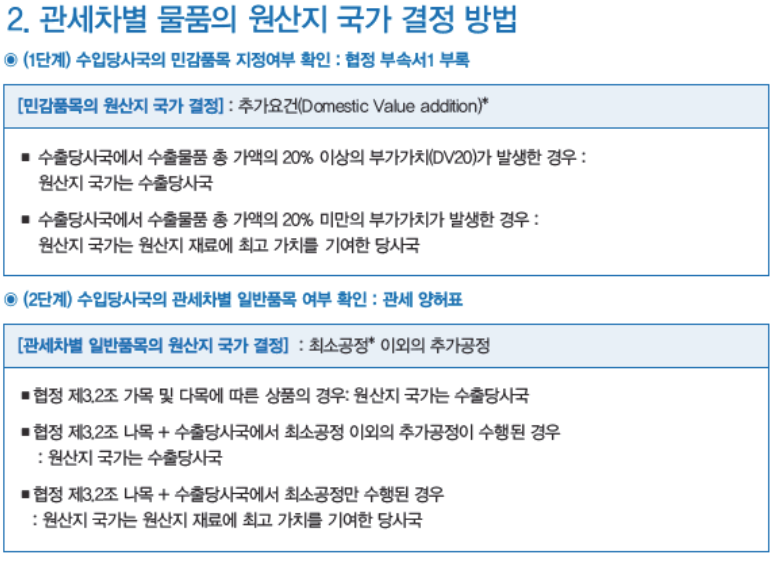

2. 관세차별 물품의 원산지 국가 결정 방법

◉ (1단계) 수입당사국의 민감품목 지정여부 확인 : 협정 부속서1 부록

[민감품목의 원산지 국가 결정] : 추가요건(Domestic Value addition)*

- 수출당사국에서 수출물품 총 가액의 20% 이상의 부가가치(DV20)가 발생한 경우 : 원산지 국가는 수출당사국
- 수출당사국에서 수출물품 총 가액의 20% 미만의 부가가치가 발생한 경우 : 원산지 국가는 원산지 재료에 최고 가치를 기여한 당사국

◉ (2단계) 수입당사국의 관세차별 일반품목 여부 확인 : 관세 양허표

[관세차별 일반품목의 원산지 국가 결정] : 최소공정* 이외의 추가공정

- 협정 제3.2조 가목 및 다목에 따른 상품의 경우: 원산지 국가는 수출당사국
- 협정 제3.2조 나목 + 수출당사국에서 최소공정 이외의 추가공정이 수행된 경우 : 원산지 국가는 수출당사국
- 협정 제3.2조 나목 + 수출당사국에서 최소공정만 수행된 경우 : 원산지 국가는 원산지 재료에 최고 가치를 기여한 당사국

자료: 관세청(2022), p. 19

□ 이뿐만 아니라 관세차별조항의 적용결과에 대한 도표에서 공통양허품목은 원산지국가를 어떻게 결정하는지 구체적으로 표시하지 않고 있음

○ 공통양허품목의 원산지국가가 수출당사자로 결정되기 위해서 어떤 원산지결정기준이나 원산지국가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지는 구분하지 않고 있음

[그림 Ⅲ-8] 「RCEP 발효에 따른 관세행정 운영지침」상 관세차별 적용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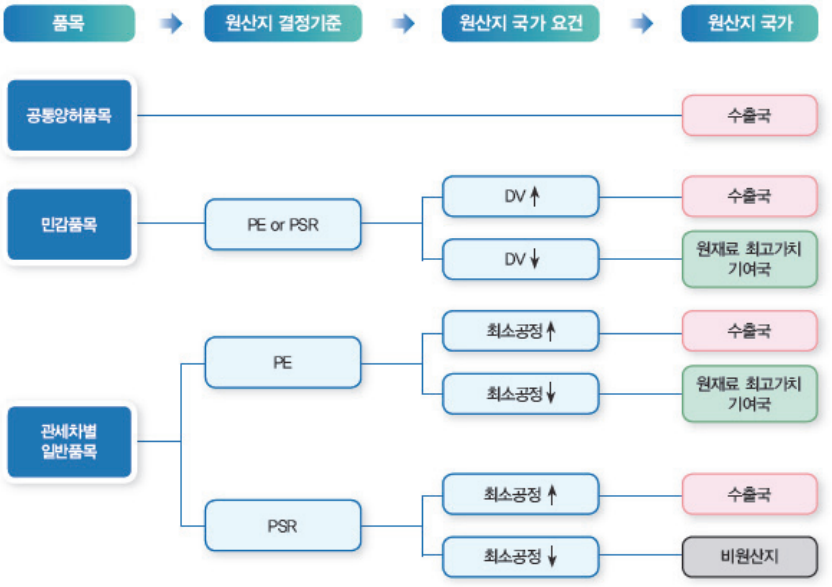

자료: 관세청(2022), p. 20

□ 이처럼 「RCEP 발효에 따른 관세행정 운영지침」은 관세차별조항에 따른 원산지국가 결정을 관세차별품목에 대해서만 설명하고 있음

○ 관세차별조항에 따른 원산지국가 결정은 관세차별품목에 한하여 설명하고 있으며, 공통양허품목의 원산지국가는 어떻게 결정되는지 언급하지 않고 있음

□ 이에 따라 관세차별조항에 따른 원산지국가 결정은 관세차별품목에 한하여 적용된다고 해석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 관세차별품목은 관세차별조항에 따라, 공통양허품목은 원산지규정에 따라 각각 원산지국가가 결정된다고 생각하기 쉬움

- 실제로 관세차별품목에 해당하지 않으면 기존의 다른 FTA처럼 원산지를 판정하면 된다고 설명하는 사례도 있음[41]

41) 고태진, 「RCEP의 불완전함을 대변하는 관세차별조항」, 『조세금융신문』, 2022. 9. 14., https://www.tfmedia.co.kr/news/article.html?no=131401, 검색일자: 2023. 2. 10.

□ 그러나 이와는 반대로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동 운영지침은 공통양허품목의 원산지국가도 관세차별조항에 따라 결정된다고 설명하고 있기도 함

○ 수출자는 수출품이 「RCEP 협정」 제3장의 요건을 충족하는 RCEP 원산지상품인 경우 원산지국가 결정방법에 따라 원산지국가를 판단한다고 설명함[42)]

○ 또한 RCEP 이행 가이드라인과 원산지증명서 작성방법에 대한 해설에서 원산지국가 판단은 원산지상품에 대해 이루어진다고 설명하고 있음[43)]

- 원산지국가 결정 시 관세차별품목 해당 여부 확인이 필요 없고, 공통양허품목도 수출당사자가 원산지국가가 아닐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음

□ 이와 같이 공통양허품목의 관세차별조항의 적용 여부 등 그 적용범위에 대한 혼란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유의가 필요함

○ 공통양허품목이 원산지규정을 충족한 경우 수출당사자 또는 생산자를 원산지국가로 판단하지 말고, 관세차별조항에 따라 원산지국가를 결정해야 함

□ 특히 RCEP 원산지상품이 국내 유통되는 경우 생산자가 수입당사자를 알 수 없으므로 원산지증명서류 발급 시 정확한 원산지국가 결정이 필요함

○ 원산지상품이 국내유통 후 수출되거나 최종 수출상품의 재료로 사용되는 경우 생산자의 원산지국가 결정이 수출자의 원산지국가 판정에 영향을 미침

□ 생산자가 원산지규정에 따라 원산지국가를 결정하는 경우 수입당사자가 어디인지에 따라 최종 수출상품에 대한 특혜관세 대우에 오류가 발생할 수 있음

○ 수입당사자가 수출당사자별 관세차별 대우를 하는 경우 관세차별조항에 따른 원산지국가에 대한 특혜대우가 적용되어야 함

○ 반면 수입당사자가 공통양허표를 적용한다면 원산지규정에 따라 원산지국가를 결정하여도 특혜관세적용에 오류가 발생하지 않음

---

42) 관세청(2022), p. 19
43) 관세청(2022), p. 21

□ 이뿐만 아니라 원산지상품이 RCEP 역내에서 유통되는 경우도 생산자가 최종 수입당사자를 알 수 없으므로 수출상품에 대한 관세대우가 잘못 적용될 수 있음

○ RCEP은 다자간 협정으로 원산지상품이 역내에서 유통된다면 국내유통과 유사하게 원산지국가 결정에 오류가 발생할 수 있음

□ 따라서 생산자 또는 수출자는 원산지상품의 관세차별품목 여부와 관계없이 관세차별조항에 따라 원산지국가를 정확하게 판정하여야 함

○ 관세차별조항에 따라 원산지국가를 결정하면 원산지상품의 거래형태나 수입당사자와 상관없이 수입당사자의 관세대우에 오류가 발생하지 않음

2. 원산지재료 생산물품에 대한 최소공정 외의 공정 수행 시기

가. 쟁점사항

□ 원산지재료로만 생산된 물품은 수출당사자에서 최소공정 외의 생산 공정이 발생한 경우 수출당사자가 원산지국가로 인정됨[44)]

○ 수출당사자에서 최소공정만이 발생한 경우 수출당사자에서 상품의 생산에 사용된 원산지재료에 최고 가치를 기여한 당사자가 원산지국가가 됨[45)]

□ 해당 규정에 따라 원산지재료 생산물품의 원산지국가를 결정하는 때에 최소공정 외의 공정이 수출당사자의 어느 생산단계에서 수행되어야 하는지 문제가 될 수 있음

○ 최종상품의 생산에 최소공정 외의 공정이 수행되어야 하는지 원재료 또는 중간재의 생산에 최소공정 외의 공정이 이루어져도 되는지 검토가 필요함

---

44) 「RCEP 협정」 제2.6조 제2항
45) 「RCEP 협정」 제2.6조 제4항

□ 특히 생산자가 중간재를 국내에서 구매하여 원산지재료 생산물품을 생산하는 경우와 같이 여러 생산자가 원산지상품의 생산에 투입되는 경우를 고려해야 함

○ 최종상품의 생산자가 아닌 중간 생산자가 최소공정 외의 공정을 수행한다면 최소공정 요건을 충족하는지 검토해 보아야 함

□ 「RCEP 협정」에서는 수출당사자에서 최소공정 외의 생산 공정이 수행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수출당사자는 수출국가 또는 수출 관세영역을 말함

○ 「RCEP 협정」에 따르면 당사자란 「RCEP 협정」이 효력있는 모든 국가 또는 개별 관세영역을 말함[46)]

□ 이와 같이 「RCEP 협정」은 원산지재료 생산물품에 수행되어야 할 최소공정 외의 공정을 수행해야 할 영역만을 규정하고 있으며 생산단계는 한정하지 않음

○ 최소공정 외의 공정이 수출국가 또는 수출 관세영역 내에서 이루어졌다면 해당 공정이 어떤 생산단계에서 수행되어야 하는지는 고려사항이 아님

□ 따라서 국내의 중간재 생산자에 의해 최소공정 외의 공정이 수행되는 경우 수출당사자에서 최소공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 이 경우 원산지상품을 생산하는 최종단계에서 최소공정이 수행되지 않더라도 원산지상품에 대하여 최소공정 이외의 공정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수출당사자가 원산지국가인 중간재가 최종상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경우 최소공정 외의 공정이 최종상품의 생산 이전단계에서 발생함

○ 중간재가 원산지재료 생산물품이라면 수출당사자가 원산지국가로 인정되기 위해서 관세차별조항에 따른 최소공정 요건이 충족되어야 함

○ 또한 중간재가 불완전생산물품이라면 품목별 원산지규정과 최소공정 요건을 충족해야 수출당사자가 원산지국가로 인정될 수 있음

---

46) 「RCEP 협정」 제1.2조 러목

□ 이 경우 수출당사자가 원산지국가인 중간재를 사용하여 생산된 원산지재료 생산물품은 최소공정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볼 여지가 있음

○ 즉 중간재 생산과정에서 이미 수출당사자에서 최소공정을 초과하는 공정이 발생하였으므로 최종상품의 생산단계에서 최소공정이 발생하지 않아도 되는 것임

□ 이와 관련하여 중간재를 다른 생산자에서 공급받는 경우와 최종생산자가 직접 생산하는 경우를 비교해 볼 수 있음

○ 이러한 예시를 통하여 최소공정 요건이 수출당사자 내에서 원산지상품에 대하여 이루어진 경우 생산단계와는 관련 없이 충족되는지 여부를 검토할 수 있음

□ 수출국 E가 원산지국가인 중간재 c를 원산지재료 d와 함께 사용하여 e를 생산하는 경우 수출국 E가 원산지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최소공정 요건을 충족해야 함

○ 중간재 c의 생산에 사용되는 원재료 a, b와 다른 원재료 d는 모두 원산지재료이며, 생산자 M과 P는 모두 수출당사자 E국에 소재함

□ 이 경우 원재료 a와 b를 사용하여 c를 생산하는 때 발생한 최소공정 이외의 공정으로 최소공정 요건이 충족되는지 여부에 따라 e의 원산지국가가 달라짐

○ 즉 원산지상품을 생산하는 모든 과정 중에서 수행된 최소공정 외의 공정을 원산지상품에 대한 공정으로 인정하는지 여부에 따라 원산지국가가 결정됨

□ 먼저 중간재를 생산하는 때에 수행된 최소공정 외의 공정으로 최소공정 요건이 충족되는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e의 원산지국가는 수출당사자인 E로 결정됨

○ 원산지재료로만 생산된 e는 수출당사자에서 최소공정을 초과하는 공정을 수행한 경우 원산지국가는 수출당사자임

□ 반면 중간재에 수행된 최소공정 외의 공정을 원산지상품에 대한 공정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e의 원산지국가는 생산에 사용된 원산지재료의 가치에 따라 결정됨

○ c의 가치가 더 큰 경우 e의 원산지국가는 E국이며, d의 가치가 더 크다면 e의 원산지국가는 D국임[47)]

[그림 Ⅲ-9] 원산지재료 생산물품 원산지국가 결정 예시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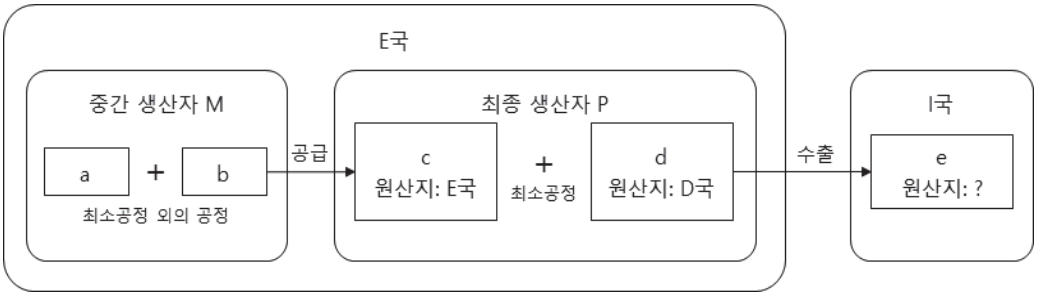

자료: 저자 작성

□ 이와 달리 중간재 c를 최종생산자가 직접 생산하는 경우 최소공정 외의 공정이 수출당사자에서 이루어졌으므로 e의 원산지국가는 수출국 E로 결정됨

○ 이 경우 e의 생산에 투입된 원재료는 a, b, d이며, e의 생산 공정에서 최소공정 외의 공정이 수행되었으므로 원산지재료 생산물품의 최소공정 요건을 충족함

- 생산자 P는 c를 중간재로 지정하지 않고 a, b를 e의 생산에 사용된 원재료로 볼 수 있음

[그림 Ⅲ-10] 원산지재료 생산물품 원산지국가 결정 예시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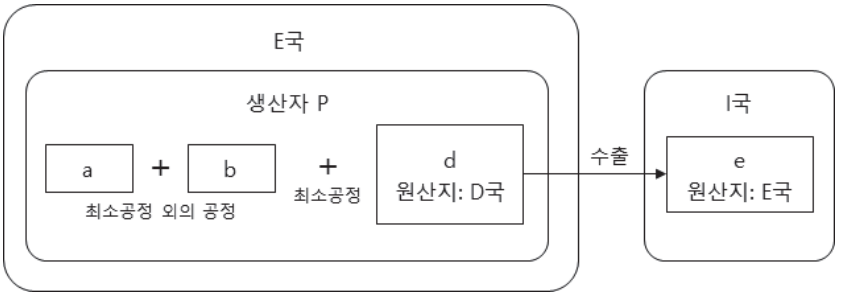

자료: 저자 작성

47) 수출당사자에서 최소공정 외의 공정이 발생하지 않아 수출당사자가 원산지국가로 결정되지 않은 경우 수출당사자가 원산지상품의 생산에 사용된 원산지재료에 최고 가치를 기여한 당사자로서 원산지국가로 결정될 수 있는지 여부는 본 연구에서는 검토하지 않음

□ 이와 같이 최소공정 외의 공정을 최종 생산단계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한정하는 경우 동일한 상품이 거래유형에 따라 원산지국가가 달라지는 경우가 발생함

○ 중간재를 구매하는 경우 원산지국가는 원산지상품의 생산에 사용된 원산지재료 중 최고 가치를 기여한 당사자가 원산지국가로 결정됨

○ 반면 중간재를 구매하지 않고 생산자가 직접 생산하여 원산지상품의 생산에 사용하는 경우 원산지국가는 수출당사자임

□ 반면 최소공정 요건을 수출당사자에서 원산지상품을 생산하는 과정 중에 발생한 공정에 대해 적용한다면 거래유형이 달라도 원산지국가는 동일하게 결정됨

○ 중간재를 다른 생산자에게 구매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최소공정 요건을 충족하게 되므로 원산지상품의 원산지국가는 수출당사자임

□ 이러한 예시를 미루어 볼 때 최소공정 외의 공정은 원산지상품을 생산하는 과정 중 어느 때라도 수행된다면 최소공정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 동일한 원재료로 생산된 동일한 상품이 거래유형에 따라 원산지국가가 달라지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며, 동일한 원산지국가로 결정되는 것이 바람직함

□ 따라서 원산지재료로만 생산된 물품의 원재료 중 수출당사자가 원산지국가인 원재료가 있는 경우 최소공정 요건은 충족되는 것으로 보아야 함

○ 해당 원산지재료에 수행된 최소공정을 초과하는 공정을 원산지상품에 대한 최소공정 외의 공정으로 인정하여 수출당사자가 원산지상품의 원산지국가가 됨

□ 한편 원산지재료가 수출당사자에서 완전생산된 경우 해당 원산지재료를 생산하는 때에 최소공정 요건이 충족되었는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음

○ 완전생산물품은 하나의 당사자에서 완전히 획득 또는 생산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원산지지위와 원산지국가가 결정되며 최소공정 요건은 필요하지 않음

□ 그러나 최소공정 규정은 물품의 본질적인 성질을 부여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공정이

이루어진 국가를 원산지로 인정하기 위한 요건임

○ 물품의 생산과정에서 최소공정만이 이루어졌다면 해당 물품의 실질이 변경되기에 충분한 정도의 공정이 수행되지 않았다고 보는 것임

□ 이와 관련하여 완전생산물품은 하나의 당사자에서 물품이 완전 획득 또는 생산되면서 물품의 본질적 특성을 부여하는 충분한 가공을 수행했다고 보아야 함

○ 따라서 완전생산물품은 완전 획득 또는 생산되는 때에 이미 최소공정 외의 공정이 수행된 것임

□ 이에 따라 완전생산된 원재료가 원산지상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경우는 최소공정 요건이 충족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 즉 완전생산된 원재료를 생산하는 때에 이미 최소공정 외의 공정이 수행된 것으로 보아야 함

나. 유의사항

□ 원산지재료로 생산된 물품은 수출당사자에서 최소공정 외의 공정이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수출당사자를 원산지국가로 인정함

○ 수출당사자는 수출이 이루어지는 국가 또는 관세영역으로 원산지상품을 생산하여 RCEP 국가로 수출하는 특정인을 뜻하지 않음

□ 이러한 최소공정 외의 공정은 수출당사자에서 원산지상품을 생산하는 단계 중에 수행되어야 하며 원산지상품을 완성하는 단계에서 수행될 필요는 없음

○ 원산지상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재료를 수출당사자에서 생산하는 과정에서 최소공정을 초과하는 공정이 수행될 수 있음

□ 따라서 원산지상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원산지재료 중 수출당사자가 원산지국가인 원재료 또는 중간재가 포함된 경우 최소공정 요건은 충족된 것으로 간주됨

○ 수출당사자가 원산지국가인 원재료를 생산하는 때에 최소공정을 초과하는 공정이 이미 수행되었으므로 원산지상품의 최소공정 요건이 충족됨

□ 이와 같이 수출당사자가 원산지국가인 원산지재료에 발생한 최소공정 외의 공정을 원산지상품에 대한 공정으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재료 공급자의 정확한 원산지국가 결정이 필요함

○ 원산지상품의 생산자는 자신이 수행한 공정이 최소공정이더라도 재료공급자의 원산지확인을 근거로 최소공정요건을 충족하였다고 판단함

□ 그러나 원산지재료 공급자의 원산지국가 판정에 오류가 있는 경우 해당 원산지재료로 생산된 물품의 원산지국가 판정에도 오류가 발생할 수 있음

○ 이로 인하여 관세대우 적용오류로 관세가 추징되거나 관세회피 등을 이유로 처벌을 받을 수도 있음

□ 특히 원산지재료 공급자가 RCEP의 다른 당사자에서 생산된 재료를 사용하여 원산지재료(중간재)를 생산하는 경우 원산지국가 판정에 유의해야 함

○ 다른 당사자에서 생산된 재료로 생산된 물품은 관세차별조항으로 원산지국가를 결정해야 하지만 원산지규정으로 원산지국가를 판단하는 오류가 발생할 수 있음

□ 「RCEP 협정」에서는 원산지결정기준의 특례인 누적조항에 따라 원산지재료의 원산지를 누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다른 당사자에서 다른 상품 또는 재료의 생산에 재료로 사용되는 원산지상품 및 재료는 그 최종상품 또는 재료의 가공이 발생한 당사자를 원산지로 여김[48)]

□ 누적규정은 원산지재료가 다른 상품 또는 재료의 생산에 사용되는지를 규정하고 있으며 최종상품에 대한 가공이 최소공정 외의 공정일 것을 요구하지는 않음

○ 즉 원산지재료의 원산지국가가 아닌 당사자에서 다른 상품 또는 재료의 생산에 사

48) 「RCEP 협정」 제3.4조

용만 된다면 해당 원산지재료의 원산지국가는 최종상품이 생산된 당사자임

□ 따라서 누적이 적용된 원산지재료는 최소공정 외의 공정이 수출당사자에서 발생하지 않아도 수출당사자가 원산지국가가 될 수 있음

○ 다른 당사자가 원산지국가인 원산지재료에 최소공정만 거쳐 다른 상품을 생산하기 위해 공급하는 경우 해당 원산지재료의 원산지국가는 수출당사자임

□ 그러나 이러한 누적은 다른 당사자에서 생산된 원산지재료가 비원산지재료와 함께 원산지상품의 생산에 사용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어야 함

○ 원산지상품이 불완전생산물품으로 품목별 원산지규정에 따라 원산지지위를 결정하는 때에 다른 당사자에서 생산된 재료는 수출당사자의 재료로 간주됨

○ 이 경우 누적이 적용되어 다른 당사자에서 생산된 재료는 원산지재료로 세번변경이 필요 없으며, 역내가치포함비율 계산 시 원산지재료가치에 포함됨

□ 다른 당사자에서 생산된 원산지재료만을 사용하여 원산지상품을 생산한 경우 원산지규정의 누적조항이 아니라 관세차별조항에 따라 원산지국가를 결정해야 함

○ 따라서 수출당사자에서 다른 당사자에서 생산된 재료에 최소공정 외의 공정을 수행해야 수출당사자가 원산지국가로 인정됨

□ 이렇게 생산된 원산지상품이 수출물품의 중간재로 사용되는 경우 중간재 생산자는 최소공정 여부에 따라 원산지국가를 결정하여 증명서류를 발급해야 함

○ 수출당사자에서 중간재를 생산하는 공정이 최소공정에 해당한다면 누적을 적용하지 않고 관세차별조항에 따라 원산지국가를 결정해야 함

□ 만약 중간재를 생산 시 최소공정만 행해지고, 해당 중간재를 사용한 원산지상품에도 최소공정만 수행된다면 원산지상품의 원산지국가는 수출당사자가 아님

○ 원산지재료로 생산된 물품이 생산되는 때에 최소공정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해당 원산지상품은 원재료가치에 따라 원산지국가를 결정해야 함

[그림 Ⅲ-11] 다른 당사자에서 생산된 원산지재료가 사용된 물품 원산지국가 결정 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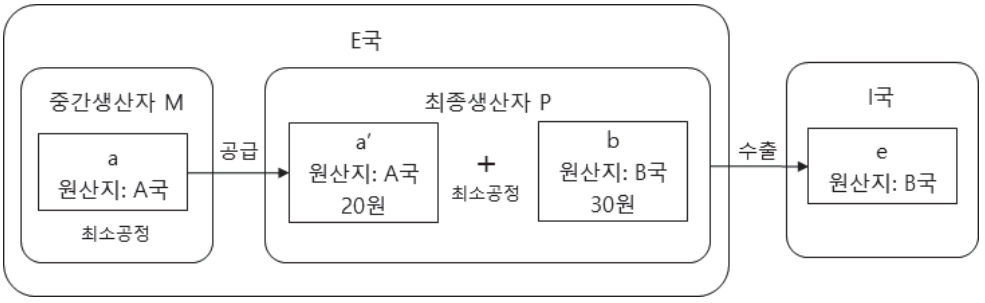

자료: 저자 작성

□ 이와 같이 중간재 공급자가 정확한 원산지국가를 결정한다면 수출당사자가 원산지국가인 중간재를 사용한 원산지재료 생산물품은 최소공정요건을 충족하게 됨

○ 이러한 중간재와 원산지재료로 원산지상품을 생산한 수출자는 자신의 공정과 관계없이 원산지상품의 원산지국가를 수출당사자로 결정할 수 있음

3. 민감품목의 국내부가가치 누적

가. 쟁점사항

□ 「RCEP 협정」은 특정당사자가 특정 품목에 대해 원산지국가를 결정하기 위한 강화된 추가요건을 적용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음

○ 이러한 특정 품목은 추가요건에 따라 원산지국가가 결정되며, 이렇게 결정된 원산지국가에 대한 수입당사자의 관세대우가 적용됨

□ 이렇게 강화된 원산지국가 결정기준이 적용되는 품목을 민감품목이라 하며, 추가요건을 충족한 물품의 원산지국가는 수출당사자이고, 그 외 물품은 다른 방법으로 원산지국가가 결정됨

○ 추가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원산지상품은 그 상품의 생산에 사용된 원재료에 최고 가치를 기여한 당사자가 원산지국가임[49)]

□ 민감품목에 대한 추가요건은 원산지상품의 유형별로 적용되는 다른 관세차별조항의 원산지국가 결정기준보다 우선하여 적용됨

○ 원산지국가 결정절차의 첫 단계가 민감품목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며, 민감품목 여부에 따라 다른 원산지국가 결정기준이 적용되는지가 결정됨

- 민감품목인 경우 추가요건에 따라 원산지국가가 결정되며, 민감품목이 아닌 경우 원산지상품의 유형에 따른 원산지국가 결정기준이 적용됨

□ 이러한 민감품목은 「RCEP 협정」 부속서 부록에서 수입당사자별로 정하고 있으며 민감품목에 적용하는 원산지국가 결정요건은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음

○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태국, 베트남, 중국, 일본, 우리나라가 「RCEP 협정」 제2.6조(관세 차별) 제3항에 관한 부록을 운영하고 있음[50)]

□ 각 당사자의 「RCEP 협정」 부속서 부록은 추가요건이란 원산지상품의 수출당사자는 원산지상품의 총가액 20% 이상이 추가된 당사자일 것을 말한다고 명시함[51)]

○ 수출당사자는 원산지상품의 생산 과정에서 필요한 변경을 가하여 20% 이상의 부가가치를 창출해야 함

□ 수출당사자가 추가한 가치는 「RCEP 협정」 제3.5조 역내가치포함비율의 산정에 따라 계산됨[52)]

---

49) 「RCEP 협정」 제2.6조 제4항

50) 말레이시아는 인도에 대하여 관세차별품목을 지정할 예정으로 인도가 협정 가입절차를 개시할 때까지 추가요건을 포함한 부록을 유예함(「RCEP 협정」 부속서 1. 말레이시아 제2.6조(관세 차별) 제3항에 관한 부록)

51) 「RCEP 협정」 부속서 1 인도네시아 제2.6조(관세 차별) 제3항에 관한 부록 제1호 가목, 필리핀 제2.6조(관세 차별) 제3항에 관한 부록 제1호 가목, 태국 제2.6조(관세 차별) 제3항에 관한 부록 제1호 가목, 베트남 제2.6조(관세 차별) 제3항에 관한 부록 제1호 가목, 중국 제2.6조(관세 차별) 제3항에 관한 부록 제1호 가목, 일본 제2.6조(관세 차별) 제3항에 관한 부록 제1호 가목, 한국 제2.6조(관세 차별) 제3항에 관한 부록 제1호 가목

○ 역내가치포함비율은 본선인도가격에서 RCEP 역내가치가 차지하는 비율로 공제법 또는 집적법을 사용하여 산정함

□ 그러나 민감품목에 수출당사자가 추가한 가치를 산정하는 때에는 역내가치포함비율 산정과는 달리 누적 원산지재료의 가치를 원산지재료가치로 포함하지 않음

○ 즉 역내가치 산정 시에는 다른 당사자에서 생산된 상품과 재료는 원산지재료로 보는 반면 민감품목의 경우 이를 비원산지재료로 여김

□ 이러한 이유로 민감품목에 대해 수출당사자가 추가한 가치는 역내가치(Regional Value Content; RVC)가 아니라 국내가치(Domestic Value addition; DV)라 함

○ 국내가치는 수출당사자뿐 아니라 다른 당사자가 원산지국가인 재료의 가치를 포함한 가치 즉 역내에서 창출된 가치와는 구분됨

○ 이는 원산지국가 결정기준을 충족하여 수출당사자가 원산지국가인 재료의 가치만을 지칭하는 개념임

□ 이와 같이 민감품목의 원산지국가가 수출당사자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수출당사자 내에서 창출된 가치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함

○ 원산지재료 생산물품이나 부가가치기준을 충족하는 불완전생산물품이라도 재료의 원산지국가에 따라 민감품목의 추가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음

□ 따라서 수출당사자에서 일정 공정이 수행됐지만 관련 규정에 따라 비원산지재료[53]로 결정된 재료에 포함된 수출당사자가 창출한 가치의 취급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52) 「RCEP 협정」 부속서 1 인도네시아 제2.6조(관세 차별) 제3항에 관한 부록 제1호 가목, 필리핀 제2.6조(관세 차별) 제3항에 관한 부록 제1호 가목, 태국 제2.6조(관세 차별) 제3항에 관한 부록 제1호 가목, 베트남 제2.6조(관세 차별) 제3항에 관한 부록 제1호 가목, 중국 제2.6조(관세 차별) 제3항에 관한 부록 제1호 가목, 일본 제2.6조(관세 차별) 제3항에 관한 부록 제1호 가목, 한국 제2.6조(관세 차별) 제3항에 관한 부록 제1호 가목

53) 민감품목과 관련하여 비원산지재료는 다른 당사자에서 생산되었으나 원산지지위와 관계없이 비원산지로 여겨진 상품이나 재료를 포함함

○ 수출당사자에서 수행된 공정이 일정비율 이상의 부가가치가 창출하지 않았거나 세 번을 변경하기에 충분한 공정이 아닌 경우 비원산지재료로 결정될 수 있음
○ 이렇게 비원산지재료로 결정된 물품이 민감품목의 생산에 사용된 경우 해당 재료의 가치를 모두 비원산지재료의 가치로 취급해야하는지 살펴보아야 함

□ 이는 비원산지재료의 가치에 포함된 수출당사자가 창출한 부가가치를 민감품목인 원산지상품의 생산과정에서 추가된 가치로 포함할 수 있을지의 문제임
○ 비원산지재료에 대해 발생한 부가가치가 원산지상품에 추가된 국내가치에 포함된다면 민감품목의 추가요건을 충족하기가 보다 용이해질 수 있음

□ 앞 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RCEP 협정」은 수출당사자를 특정 수출자나 생산자로 한정하지 않고 수출이 이루어지는 국가 또는 관세영역으로 보고 있음
○ 즉 수출당사자에 소재한 비원산지재료 생산자와 원산지상품의 생산자가 다른 자연인 또는 법인이라도 수출당사자의 개념에 포함됨

□ 또한 「RCEP 협정」은 원산지상품의 생산과정에서 필요한 변경을 가하여 추가된 가치를 국내가치로 명시하고 있음
○ 원산지상품의 생산에 사용된 비원산지재료에 대한 공정은 원산지상품의 생산과정이므로 해당 공정에서 추가된 가치는 국내가치에 해당됨

□ 이에 따라 비원산지재료에 대하여 수출당사자에서 수행된 공정으로 발생한 부가가치는 수출당사자가 추가한 가치에 포함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임
○ 「RCEP 협정」은 이를 명시적으로 규정하지는 않으나 관련 규정의 해석에 따라 비원산지재료에 대해 수출당사자에서 발생한 가치를 국내가치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함

□ 이와 관련하여 우리나라는 수출물품의 재료를 생산하는 자가 국내에서 수행한 공정과 그로 인해 발생한 가치를 증명하기 위한 국내제조확인제도를 운영함

○ 재료 생산자 등은 생산자 또는 수출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재료의 국내제조 사실을 확인하여 작성한 서류를 생산자 또는 수출자에게 제공할 수 있음[54)]

□ 국내제조확인서는 최종상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재료의 원산지지위가 아니라 재료에 대해 발생한 공정과 가치를 확인하는 서류임

○ 이를 통해 수출자는 최종상품의 생산단계에서 발생한 공정뿐 아니라 국내에서 발생한 전체 공정을 최종상품의 원산지 판정요소로 사용할 수 있음

[그림 Ⅲ-12] 국내제조확인서 활용 예시

공정	브라질산 원면 (HS 5201)	->	한국에서 A사 면사제조 (HS 5205)	->	한국에서 B사가 면직물 제조 (HS 5208 ~ 5212)	->	미국에 수출
원산지 결정 기준		CC		CTH (5205로 부터 제외)	생산공정 누적기준에 따라 B업체가 A업체 생산공정을 누적 (5201→5208)		
국내제조 확인제도 미도입	브라질				원산지 미충족		특혜수출 不可
국내제조 확인제도 도입	브라질산		비원산지 (국내생산 확인)		원산지충족		특혜수출 可能

자료: 관세청 YES FTA, https://www.customs.go.kr/ftaportalkor/cm/cntnts/cntntsView.do?mi=3455&cntntsId=1110, 검색일자: 2023. 2. 17.

□ 따라서 국내제조확인서는 원산지재료뿐 아니라 비원산지재료에 대한 국내발생 공정과 가치를 최종상품의 원산지국가 결정에 포함하여 고려할 수 있도록 해줌

○ 원산지재료는 원산지지위만으로 원산지규정에 따른 공정이 수행되었음이 확인되므로 국내제조확인서를 통해 공정이나 부가가치를 증명할 필요성이 낮음

○ 따라서 국내제조확인서는 비원산지재료에 대해 활용도가 높은 제도임

□ 이와 같이 「RCEP 협정」의 관련 규정과 우리나라의 국내제조확인제도는 수출당사자에서 발생한 모든 공정과 가치를 최종상품의 원산지국가 결정요소로 인정함

54)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 제1항

○ 원산지상품의 최종 생산단계에서 발생하지 않은 공정이나 가치라도 수출당사자 내에서 발생하였다면 원산지상품의 원산지국가 결정에 고려되어야 함

□ 이에 따라 민감품목의 국내가치 산정 시 비원산지재료에 대하여 수출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도 포함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임

○ 이를 통하여 수출자는 보다 용이하게 민감품목의 원산지국가를 수출당사자로 인정받을 수 있음

나. 유의사항

□ 민감품목에 대해 발생한 국내부가가치의 비율을 산출하기 위해서는 민감품목의 생산에 사용된 재료의 가치를 확인해야 함

○ 국내가치포함비율은 민감품목인 수출물품의 본선인도가격에서 국내재료의 가치가 차지하는 비율로 공제법 또는 집적법에 따라 산정됨

□ 따라서 최종상품의 원산지지위를 결정하기 위해서 필요하지 않았던 경우라도 재료의 원산지나 가격을 확인하는 서류가 요구되는 경우가 있음

○ 예를 들어 세번변경기준이 적용되는 품목의 경우 최종상품과 재료의 세번이 상이하다면 재료의 원산지확인이 필요 없음

○ 그러나 최종상품이 수입당사자의 민감품목인 경우 재료의 가치를 국내발생 가치로 인정받기 위해 원산지확인이 요구됨

□ 이뿐만 아니라 민감품목에 대한 국내발생가치를 파악하기 위해서 수출자나 생산자가 이전 단계의 생산 공정에서 발생한 부가가치를 확인해야 하기도 함

○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상품 또는 재료에 대한 원산지지위를 확인하는 것에 덧붙여 상품 또는 재료에 대하여 발생한 가치내역을 파악해야 하는 경우가 있음

□ 민감품목의 수출자와 생산자가 다른 경우 수출자는 수출물품의 원산지확인뿐 아니라 생산에 사용된 재료의 가치를 파악하여야 함

○ 수출물품이 민감품목이 아닌 경우 생산자가 확인한 원산지국가를 근거로 원산지국가를 증명할 수 있으나 민감품목인 경우 국내발생가치를 확인해야 함

□ 또한 비원산지재료의 국내발생가치가 인정된다면 일반적인 원산지확인에는 필요하지 않았던 가치 확인절차가 민감품목의 원산지국가 결정을 위해 추가로 요구됨

○ 일반적으로 국내에서 공정이 수행되었으나 원산지규정을 충족하지 못한 비원산지재료는 원산지에 대한 증빙이 필요 없음

○ 그러나 국내에서 수행된 공정을 통해 창출된 가치를 민감품목에 대한 가치로 포함시키기 위해서는 비원산지재료의 가격명세가 필요함

□ 이와 같이 민감품목의 원산지국가 결정을 위해서는 기존에는 필요하지 않았던 별도의 원산지확인이나 가치확인 절차가 필요함

○ 이러한 절차는 대부분 민감품목의 수출자가 스스로 이행하기 어려우며, 재료 또는 상품의 생산자의 협조가 필요함

□ 그러나 재료 또는 상품에 대한 가치내역을 생산자가 수출자 또는 최종생산자에게 제공해야 하는 경우 민감한 정보가 노출될 위험이 있음

○ 재료 또는 상품을 생산하는 공정과 그에 따라 발생한 가치 또는 생산에 투입되는 재료와 그 가격을 거래상대방에게 제공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 특히 비원산지재료에 대한 국내발생 부가가치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비원산지재료에 수행된 공정과 그 공정에 투입된 비용이 최종상품의 생산자에게 공개되어야 함

○ 그러나 이러한 공정은 생산자 고유의 방식일 수 있으며, 공정에 투입된 각종 비용이 노출되면 생산자의 가격경쟁력이나 영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더욱이 민감품목 여부는 원산지상품이 수출되는 수입당사자가 확정되어야 결정되므로 생산자등은 재료등의 공급 당시 수입당사자를 알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함

○ 재료등이 공급되는 때에는 사용될 상품이 결정되지 않거나 상품이 판매되지 않은 경우가 많으며 이 경우 생산자등은 최종상품의 민감품목 여부를 알 수 없음

□ 따라서 이미 재료 또는 상품의 원산지확인을 위한 절차를 이행한 생산자등이 민감품목의 원산지국가 결정을 위한 자료를 추가로 구비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함

○ 「RCEP 협정」에 따른 원산지국가를 판정하여 증명서류를 발급했다 하더라도 민감품목의 추가요건의 충족에 필요한 정보의 증명이 필요함

□ 이와 같이 민감품목의 원산지국가 결정을 위해서는 재료 또는 상품의 생산자의 협력이 중요하므로 이를 보다 용이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의 마련이 필요함

○ 생산자의 민감한 정보가 노출되지 않는 방법을 고안하고, 생산자가 중복하여 원산지국가 결정에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지 않는 방안이 필요함

Ⅳ. 시사점 및 개선방안

1. 관세차별조항의 적용범위 명확화

□ 「RCEP 협정」에서는 원산지상품의 지위를 결정하는 원산지규정 외에 RCEP 원산지국가를 결정하는 기준을 관세차별조항에 포함하고 있음

○ RCEP은 다자간 협정으로 여러 당사자가 하나의 물품의 생산에 관여한 경우 어느 당사자를 원산지국가로 보아야 할지 기준이 필요함

□ 「RCEP 협정」의 관세차별조항은 ① 관세차별품목의 관세대우, ② 원산지국가 결정기준으로 구성됨

○ 관세차별품목의 관세대우는 RCEP 원산지국가에 따라 달라지며, RCEP 원산지국가는 원산지국가 결정기준에 따라 결정됨

○ 즉 관세차별품목의 RCEP 특혜관세는 원산지국가 결정기준에 따라 결정됨

□ 이와 같이 관세차별조항에 포함되어 관세차별품목의 관세대우를 결정하는 기준인 원산지국가 결정기준은 관세차별품목에만 적용된다고 해석하기 쉬움

○ 원산지국가 결정기준은 원산지지위를 판정하는 제3장의 원산지규정과 별도로 제2장의 관세차별조항에 포함되어 있음

□ 「RCEP 협정」에서 원산지국가 결정기준을 관세차별조항에 포함하고 있는 것은 당사자들의 관세차별대우로 인하여 원산지국가의 결정이 필요하기 때문임

○ 「RCEP 협정」은 수입당사자가 당사자별로 적용할 관세대우를 다르게 정할 수 있도

록 하고 있으며 일부 당사자가 이러한 관세차별을 운영하고 있음

□ 만약 「RCEP 협정」에서 당사자 내의 관세차별대우를 인정하지 않았다면 기존의 다른 FTA처럼 원산지상품의 원산지국가를 수출당사자로 결정하여도 무방함

○ 당사자별 관세대우를 정하지 않고 협정 당사자들에게 공통의 관세율을 적용한다면 특혜관세는 RCEP 원산지국가와 관계없이 원산지지위로 결정됨

□ 이러한 이유로 「RCEP 협정」은 관세차별조항에 원산지국가 결정기준을 포함하고 있으나 원산지국가 결정기준이 관세차별품목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은 아님

○ 관세차별조항의 원산지국가 결정기준은 관세차별품목이 아닌 모든 원산지상품에 대하여 적용됨

○ 「RCEP 협정」에서는 제2.6조 제2항에서 '원산지상품의 RCEP 원산지국가는'이라고 규정하여 원산지국가 결정의 적용대상이 원산지상품임을 명시함

□ RCEP은 다자간 협정이므로 한 당사자의 원산지국가 결정이 다른 당사자의 원산지국가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예를 들어 관세차별품목의 생산에 사용되는 공통양허품목의 원산지국가에 따라 관세차별품목의 원산지국가가 달라질 수 있음

□ 이와 같이 공통양허품목 또한 「RCEP 협정」에서 당사자별 관세차별을 인정함에 따라 원산지국가를 결정해야 할 필요가 있음

○ 공통양허품목도 관세차별품목의 원산지국가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원산지지위 결정뿐 아니라 원산지국가 결정이 필요함

□ 따라서 공통양허품목이라도 관세차별품목과 마찬가지로 관세차별조항의 원산지국가 결정기준에 따라 원산지국가를 결정해야 함

○ 공통양허품목과 관세차별품목의 원산지국가 결정기준이 다르다면 이를 악용하여 관세회피 등 「RCEP 협정」의 목적에 반하는 행위가 발생할 수 있음

□ 이러한 점을 미루어 볼 때 관세차별조항의 원산지국가 결정기준은 공통양허품목을 포함한 모든 원산지상품에 대하여 적용됨

○ RCEP 원산지증명서의 작성방법에서도 모든 원산지상품에 대하여 관세차별조항에 따라 결정된 원산지국가를 기재하도록 하고 있음

○ 또한 RCEP 이행 가이드라인도 공통양허품목과 관세차별품목의 원산지국가 결정절차를 구분하지 않고 동일한 절차를 따르도록 하고 있음

□ 그러나 관세차별조항의 원산지국가 결정기준이 관세차별품목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오해하기 쉬우므로 이에 대한 유의가 필요함

○ 공통양허품목은 수입 시 원산지국가에 따라 관세대우가 달라지지 않으므로 관세차별조항에 따라 원산지국가를 결정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음

□ 이에 따라 RCEP 관련 규정이나 해설서에서 관세차별조항이 관세차별품목뿐만 아니라 모든 원산지상품에 대하여 적용된다는 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 원산지국가 결정기준이 관세차별조항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관련 규정이나 설명은 원산지국가 결정을 관세차별과 관련되어 규정하거나 해석하고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 「RCEP 발효에 따른 관세행정 운영지침」에 관세차별조항의 적용범위를 명확히 규정하여 원산지국가 결정 오류를 방지할 수 있음

○ 운영지침은 RCEP 이행 가이드라인과 원산지증명서 기재요령에 따라 공통양허품목도 관세차별조항에 따라 원산지국가 결정이 이루어진다고 규정함

○ 그러나 관세차별품목에 대하여만 원산지국가 결정을 설명하고 있기도 함

□ 먼저 관세차별의 대상을 원산지상품으로 명시하고 있으나 하위 목차에서 관세차별품목만을 열거하고 있으므로 공통양허품목도 대상에 포함됨을 명확히 해야 함

○ 관세차별의 대상인 원산지상품을 ① 공통양허품목, ② 관세차별 일반품목, ③ 민감품목으로 구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 또한 원산지국가 결정방법에 대한 설명을 관세차별품목으로 한정하지 말고, 그 대상을 원산지상품으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함

○ 원산지국가를 결정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의 제목을 관세차별품목의 원산지국가 결정방법에서 원산지상품의 원산지국가 결정방법으로 변경하는 것을 고려해야 함

□ 원산지국가 결정에는 관세차별품목 여부의 확인은 필요 없으므로 운영지침의 원산지국가 결정방법에서 이러한 단계를 원산지결정기준 확인으로 대체할 수 있음

○ 원산지국가 결정방법은 관세차별품목 여부에 따라 달라지지 않으므로 해당 단계는 필요 없으며, 결정방법의 적용기준이 되는 원산지규정을 확인해야 함

- 운영지침에서는 RCEP 이행 가이드라인의 원산지국가 결정절차를 따르면 수입당사자의 관세율표 확인 없이 원산지국가 결정이 가능하다고 설명하고 있음
- 그러나 원산지국가 결정방법에서는 관세양허표를 통해 관세차별품목 여부를 확인하는 단계를 추가하고 있음

□ 이뿐만 아니라 원산지국가 결정을 위한 관세차별 적용결과를 공통양허품목과 관세차별품목으로 구분하지 않는 것이 마땅한 것으로 보임

○ 원산지국가 결정은 민감품목의 경우 강화된 추가요건을 적용하므로 구분하여야 하지만 공통양허품목과 관세차별 일반품목은 동일한 기준이 적용됨

○ 따라서 공통양허품목을 관세차별품목과 구별하여 원산지국가 결정 결과를 표시함으로써 원산지국가 결정기준이 상이한 것처럼 표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 다만 관세차별품목의 경우 이와 같은 방법에 따라 결정된 원산지국가에 대하여 수입당사자가 정한 관세대우가 적용됨을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임

○ 관세차별조항이 모든 원산지상품에 대하여 적용되지만 관세차별품목은 관세대우를 결정하기 위한 기준임을 명백히 하는 것이 바람직함

□ 한편 우리나라는 「RCEP 협정」의 발효에 따라 원산지확인서의 양식을 원산지상품의

경우 해당 원산지국가를 기재하도록 개정하였음[55]

○ 기존의 원산지확인서의 작성방법에서는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는 물품의 경우 원산지를 한국으로 기재하도록 하였음

○ RCEP은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는 원산지상품이라도 원산지국가가 다른 당사자일 수 있으므로 이를 기재할 수 있도록 양식을 개정한 것임

□ 그러나 개정된 원산지확인서 작성방법에서도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는 물품'에 대해 해당 원산지를 기재하도록 설명하고 있음

○ 이러한 작성방법은 원산지결정기준에 따라 원산지국가가 결정된다고 해석될 여지가 있음

□ RCEP의 경우 원산지결정기준이 아니라 관세차별조항에 따라 원산지국가가 결정되므로 원산지확인서 작성방법에서도 이를 명확히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 해당 작성방법에 RCEP의 경우 제2.6조에 따라 결정된 원산지국가를 기재한다는 단서를 삽입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음

□ 이와 같이 관세차별조항의 적용범위를 원산지상품으로 명백히 함으로써 원산지국가 결정기준의 적용 오류나 악용을 방지할 수 있으리라 기대됨

○ 공통양허품목에 대한 정확한 원산지국가 결정으로 이를 사용하여 생산된 관세차별 품목의 원산지국가 결정 또한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음

---

55)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2. 7. 5.] [기획재정부령 제923호, 2022. 7. 5., 일부개정]

2. 완전누적의 도입

□ 「RCEP 협정」에서는 원산지국가를 결정하기 위해서 수출당사자에서 최소공정 외의 공정이나 일정비율 이상의 부가가치가 발생하기를 요구함

○ 민감품목의 경우 수출당사자에서 상품가액의 20%의 가치를 추가해야 수출당사자가 원산지국가로 인정될 수 있음

○ 원산지재료로만 생산된 물품은 수출당사자에서 최소공정 외의 공정이 행해진 경우에 한하여 수출당사자를 원산지국가로 봄

□ 이와 같이 「RCEP 협정」에서는 수출당사국에서 발생한 공정이나 부가가치를 원산지국가 결정에 중요한 기준으로 정하고 있음

○ 이는 관세차별에 따라 상대적으로 저세율이 적용되는 수출당사자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생산활동이 수행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한 것임

□ 이러한 공정이나 부가가치 발생요건이 없다면 저세율이 적용되는 당사자를 단순경유함으로써 특혜관세 대우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됨

○ 원산지재료 생산물품은 「RCEP 협정」 제3.6조의 최소공정 및 가공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최소공정만 수행된 수출당사자가 원산지국가로 결정될 수 있음

○ 또한 민감품목도 원산지상품의 지위를 획득한다면 경유국에서 원산지재료 생산물품으로 취급되므로 최소공정만으로 경유국이 원산지국가로 인정될 수 있음

□ 이와 같이 관세차별조항에 따른 원산지국가 결정요건은 원산지상품에 일정 수준 이상의 공정이나 부가가치가 발생한 당사자에 대한 관세대우를 적용하도록 함

○ 이는 수입당사자가 당사자별로 관세대우를 다르게 정하고 있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수단임

□ 따라서 원산지국가의 결정에서 일정 공정과 부가가치가 발생한 당사자가 어디인지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한 판단요소임

○ 수출당사자에서 협정에서 정한 공정과 부가가치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수출당사자가 아닌 다른 RCEP 당사자가 원산지국가로 결정됨

□ 특히 수출당사자에서 원산지상품이 여러 단계의 생산과정을 거치는 경우 수출당사자에서 발생한 공정과 부가가치를 판단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음

○ 원산지상품의 최종 생산단계 이전에 발생한 공정이나 부가가치를 원산지상품에 대하여 발생한 공정이나 부가가치로 볼 수 있을지 검토가 필요함

□ 「RCEP 협정」은 이전 생산단계에서 발생한 공정과 부가가치도 인정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되지만 이를 허용하는 명백한 규정은 없음

○ 「RCEP 협정」은 최소공정 외의 공정과 20% 이상의 부가가치의 발생이 수출당사자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음

○ 즉 수출당사자인 수출국가 또는 수출관세영역 내에서 발생한 공정이나 부가가치라면 어느 단계에서 발생한 것인지는 관계없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음

□ 이를 위해 수출당사자에서 발생한 공정과 부가가치를 생산단계와 관계없이 원산지국가 결정의 판단요소로 적용할 수 있도록 완전누적의 도입을 검토할 수 있음

○ 완전누적이란 다른 당사자에서 수행된 공정과 이에 따라 창출된 부가가치를 자국에서 수행·창출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규정임[56]

□ 완전누적은 모든 생산 활동의 누적을 허용하므로 최종 생산단계 이전에 발생한 공정과 부가가치를 원산지상품에 대하여 발생한 것으로 간주함

○ 완전누적은 좁게는 공정의 누적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으나 부가가치를 포함한 모든 생산 활동을 최종 생산단계에서 발생한 것으로 인정함

---

56) 일반적으로 완전누적은 원산지재료를 최종 원산지상품의 생산 당사자의 재료로 간주하는 재료공정과 구분하여 공정누적으로 칭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공정과 부가가치를 모두 누적한다는 의미를 강조하기 위하여 부분누적과 구분되는 완전누적으로 칭함

□ 따라서 완전누적을 통하여 FTA 당사자의 원산지재료뿐만 아니라 비원산지재료의 공정 및 부가가치 누적까지 허용할 수 있음[57]

○ 비원산지재료라도 그 재료의 생산에 사용된 원산지재료, 수행된 공정 및 부가가치는 최종상품의 원산지 결정에서 역내산 가치에 기여할 수 있음

□ 완전누적은 일반적으로 협정 당사자와 상대 당사자 간 모든 생산활동의 누적뿐 아니라 하나의 당사자 내에서도 다른 생산자의 생산을 누적이 가능하도록 함

○ 상품이 하나 이상의 생산자에 의하여 어느 하나 또는 상대 당사자의 영역 내에서 생산된 경우 그 상품은 원산지상품임[58]

□ 이러한 완전누적을 RCEP에도 도입하면 수출당사자에서 발생한 공정이나 부가가치가 생산단계와 관계없이 원산지상품에 대한 공정이나 가치의 누적이 명백해 짐

○ 원산지상품이 수출당사자에서 생산된 경우 이전 단계 생산자가 수행한 공정이나 창출한 부가가치를 최종생산자가 수행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음[59]

[그림 Ⅳ-1] 완전누적 적용 사례

• 거래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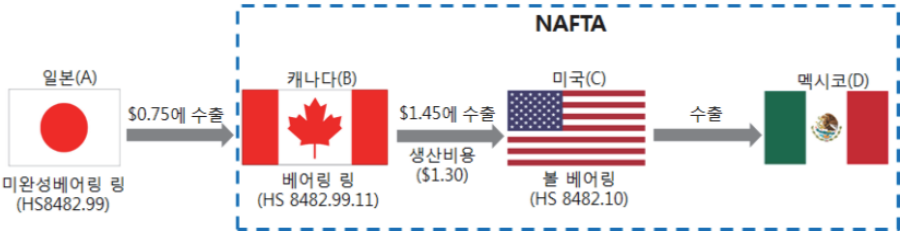

57) 박지은·제현정, 「무역업계가 알아야 할 FTA 원산지 누적조항의 비교 및 시사점」, 『TRADE FOCUS』, 2016년 제18호, 한국무역협회, 2016, pp. 5~6(강성훈·이재선·김미정, 「다자간 FTA 확산에 따른 누적기준의 이해와 활용방안」,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7, p. 15에서 재인용)

58) 「한-미 FTA 협정」 제6.5조

59) YES FTA, https://www.customs.go.kr/ftaportalkor/cm/cntnts/cntntsView.do?mi=3455&cntntsId=1110, 검색일자: 2023. 2. 22.

[그림 Ⅳ-1]의 계속

- 미국, 캐나다, 멕시코는 FTA를 체결하면서 완전누적을 허용하였음
- 일본의 생산자 A로부터 미완성베어링 링(제8482.99호)을 0.75 달러에 수입한 캐나다 생산자 B는 1.30 달러의 생산비용으로 베어링 링(제8482.99.11호)를 제조하여 미국의 생산자 C에게 1.45 달러로 수출함
- 미국의 생산자 C는 캐나다 생산자 C에게 수입한 원재료로 볼 베어링(제8482.10)을 생산하여 멕시코 수입자 D에게 수출함

• **베어링 링(제8482.99호)의 원산지결정기준**
- 다른 호로부터 제8482.91호 내지 제8482.99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 **볼 베어링(제8482.10호)의 원산지결정기준**
- 다른 호로부터 제8482.10호 내지 제8482.8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 아래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a) 거래가격법(Transaction value[1] method) 60% 이상 또는
  (b) 순원가법(Net cost method) 50% 이상

• **완전누적 조항: 제404조 제2항**
2. 다른 생산자의 제품을 가지고 제품 생산에 누적을 선택하고자 하는 생산자의 제품은 단일 생산자의 생산인 것으로 간주할 수 있음

• **소요부품명세서(Bill of Materials): 미국 생산자 B의 볼베어링(제8482.10호)**

누적 미적용 시	
내역	단가(달러)
비원산지재료	1.45
원산지재료	0.45
인건비	0.75
간접비	0.05
총합계	2.70

주: 1) 캐나다 생산자 A의 베어링 링 판매비용

누적 적용 시			
구분	내역	단가(달러)	비고
베어링 링	미완성베어링 링 (일본산)	0.75	비원산지재료의 역외 부가가치
	원산지재료	0.15	비원산지재료의 역내 부가가치
	인건비	0.35	
	간접비	0.05	
원산지재료		0.45	
인건비		0.75	
간접비		0.05	
완제품	총합계	2.55	

• **베어링 링(제8482.99호)의 원산지판정**
- 베어링 링(제8482.99호)의 경우 미완성 베어링 링(제8482.99호)으로부터 생산됨에 따라 원산지결정기준인 4단위 세번변경이 되지 않았으므로 → 원산지결정기준 불충족 ⇒ 따라서 베어링 링은 비원산지재료

[그림 Ⅳ-1]의 계속

• **볼 베어링(제8482.10호)의 원산지판정**

① 세번변경기준 적용

- 볼베어링(제8482.10호)의 경우 세번변경기준 또는 부가가치기준을 선택할 수 있음
- 볼베어링과 베어링링의 4단위 세 번 모두 제8482호로 동일 → 원산지결정기준 불충족

• **베어링 링(제8482.99호)의 원산지판정**

- 베어링 링(제8482.99호)의 경우 미완성 베어링 링(제8482.99호)으로부터 생산됨에 따라 원산지결정기준인 4단위 세번변경이 되지 않았으므로 → 원산지결정기준 불충족 ⇒ 따라서 베어링 링은 비원산지재료

• **볼 베어링(제8482.10호)의 원산지판정**

① 세번변경기준 적용

- 볼베어링(제8482.10호)의 경우 세번변경기준 또는 부가가치기준을 선택할 수 있음
- 볼베어링과 베어링링의 4단위 세 번 모두 제8482호로 동일 → 원산지결정기준 불충족

② 부가가치기준 적용

1) 누적기준 미적용 시

- 캐나다 생산자 B가 생산정보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미국 생산자 C는 비원산지재료의 역내 부가가치 누적이 불가능함
- 거래가격(TV)법을 사용한다면 원산지결정기준인 60% 이상이어야 하지만 역내 부가가치가 46%로 60% 미만임 → 원산지결정기준 불충족

$$\text{RVC}= \frac{TV+\ VNM^{2)}}{TV} = \frac{2.70-1.45}{2.70} = 46\% \ 〉\ 60\%$$

2) 누적기준 적용 시

- 캐나다 생산자 B의 생산정보를 통해 누적을 적용할 경우 순원가(NC)법을 사용한다면 역내 부가가치가 71%로 볼 베어링(제8482.10호)의 원산지결정기준인 50%를 초과함 → 원산지결정기준 충족

$$\text{RVC}= \frac{NC-\ VNM}{NC} = \frac{2.55-0.75}{2.55} = 71\% \ 〈\ 50\%$$

주: 1) FOB 가격을 기준으로 조정한 가격
2) VNM(Value of Non-Originating Material): 물품 생산에 투입된 비원산지재료의 가격

자료: 미국 세관국경보호국(CBP), https://www.cbp.gov/trade/nafta/guide-customs-procedures/other-instances-confer-origin/accumulation, 검색일자: 2023. 2. 22.(강성훈 외 2인(2017), pp. 50~52에서 재인용)

□ 「RCEP 협정」은 원산지재료의 누적만을 인정하고 있으며, 당사자들에서 수행되는 모든 생산 및 상품에 부가되는 가치의 누적은 추후 검토하기로 하고 있음[60]

○ 당사자들은 협정의 발효일에 누적적용의 확대를 고려할 것이며, 검토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그 검토를 마침

□ 이를 통하여 완전누적이 도입된다면 관세차별조항의 원산지국가 결정기준에 따라 최소공정요건이나 국내가치 발생요건의 충족이 용이해질 수 있음

○ 수출당사자의 원산지재료에 수행된 최소공정 외의 공정이 원산지상품에 대한 공정으로 인정되어 원산지상품에 대한 최소공정요건 충족이 보다 수월해짐

○ 또한 수출당사자에서 비원산지재료를 생산하면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원산지상품에 대해 발생한 가치에 합산될 수 있음

□ 그러나 완전누적은 원산지국가 결정의 요건뿐 아니라 원산지규정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함

○ 완전누적은 품목별원산지규정의 세번변경기준, 부가가치기준, 가공공정기준의 충족을 보다 용이하게 해줌

□ 따라서 다른 원산지규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완전누적의 도입보다는 관세차별조항에 관련 규정을 삽입하는 방법을 검토해볼 수 있음

○ 이러한 방법을 통하여 다른 원산지결정기준과 관련없이 수출당사자의 원산지국가 결정은 보다 수월하게 할 수 있음

□ 먼저 원산지재료로 생산된 물품의 최소공정요건과 관련하여 최소공정 조항에 수출당사자에서 행해진 모든 작업이 함께 고려된다는 단서조항을 삽입할 수 있음

○ 다른 FTA의 경우 불인정공정 규정에 이러한 단서를 추가하여 당사자 내에서 발생한 공정을 모두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60) 「RCEP 협정」 제3.4조 제2항

〈표 Ⅳ-1〉 불인정공정의 누적을 인정하는 FTA 조항

FTA	불인정공정, 최소공정 또는 가공
한-EFTA	해당 상품에 행하여진 작업 또는 가공이 불충분한 것으로 간주되는지 여부를 결정할 경우 그 상품에 대하여 당사국에서 행하여진 모든 작업이 함께 고려된다.
한-인도	해당 상품에 이루어진 작업 또는 가공이 불충분한 것으로 간주되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 그 상품에 대하여 당사국에서 행하여진 모든 공정이 고려된다.
한-EU	해당 제품에 행해진 작업 또는 가공이 불충분한 것으로 간주되는지 여부를 결정할 때 그 제품에 대하여 당사자 내에서 행해진 모든 공정이 함께 고려된다.
한-페루	해당 상품에 행해진 공정이 불인정공정으로 간주되는지를 결정할 때는 그 상품에 대해 당사국에서 행해진 모든 공정이 함께 고려된다.
한-호주	상품에 대하여 당사국의 영역에서 수행되는 모든 공정과 처리는 그 상품에 가하는 공정과 처리가 불인정공정의 범위 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결정할 때 함께 고려된다.
한-터키	해당 제품에 행해진 작업 또는 가공이 불충분한 것으로 간주되는지 여부를 결정할 때 그 제품에 대하여 당사국 내에서 행해진 모든 공정이 함께 고려된다.
한-중국	해당 상품에 행해진 작업 또는 가공이 최소공정 또는 가공으로 간주되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 그 상품에 대하여 당사국에서 수행된 모든 공정이 함께 고려된다.
한-영국	해당 제품에 행해진 작업 또는 가공이 불충분한 것으로 간주되는지 여부를 결정할 때 그 제품에 대하여 당사국 내에서 행해진 모든 공정이 함께 고려된다.
한-이스라엘	해당 상품에 행해진 작업 또는 가공이 불충분한 것으로 간주되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 그 상품에 대하여 당사국에서 수행된 모든 공정이 함께 고려된다.

자료: 「한-EFTA 협정」 제6조 제2항, 「한-인도 협정」 제3.6조 제2항, 「한-EU 협정」 제6조 제2항, 「한-페루 협정」 제3.5조 제2항, 「한-터키 협정」 제6조 제2항, 「한-호주 협정」 제3.12조 제2항, 「한-중국 협정」 제3.7조 제2항, 「한-영국 협정」 제6조 제2항, 「한-이스라엘 협정」 제3.2조 제2항

□ 이러한 규정을 추가하여 최소공정의 판단에 당사자에서 수행된 모든 공정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는 FTA는 완전누적을 허용하고 있지 않은 FTA임

○ 즉 완전누적을 허용하지 않는 FTA에서도 최소공정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수출당사자에서 발생한 모든 공정을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임

□ 이와 같은 FTA와 유사하게 RCEP에서도 원산지재료 생산물품의 원산지국가 결정에 대한 최소공정 규정에 수출당사자 내 공정의 누적을 허용할 수 있음

○ 이는 수출당사자에서 수행된 공정을 최소공정 여부를 판단하는 때만 누적하도록 하므로 다른 당사자의 공정이 다른 원산지규정 판정에 고려되지 않음

□ 또한 이와 유사한 규정을 민감품목의 국내가치 산출요건에도 추가한다면 수출당사자에서 비원산지재료에 추가한 부가가치 또한 국내가치에 포함될 수 있음

○ 원산지상품에 추가된 가치를 계산하는 때에 수출당사자에서 원산지상품의 생산 시 발생한 모든 가치를 고려한다는 규정을 마련할 수 있음

□ 이와 같이 원산지국가 결정 시 수출당사자에서 발생한 모든 공정과 부가가치를 고려하도록 명백한 규정이 마련된다면 이와 관련한 해석의 이견이 없어지게 됨

○ 우리나라는 국제제조확인제도를 통하여 국내 규정을 마련하고 있지만 협정상 명백한 규정이 없다면 이에 대한 해석으로 당사자 간 분쟁이 발생할 수 있음

□ RCEP이 발효된 지 1여년이 지난 시점에서 아직 원산지국가 결정과 관련한 사례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명백한 규정이 마련된다면 다툼을 방지할 수 있음

○ 관련 규정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원산지국가 결정을 위한 요건의 충족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규정의 도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3. 관련 양식의 정비 및 활용

□ 우리나라는 「RCEP 협정」의 발효와 관련하여 원산지확인서, 원산지소명서 등 원산지 증명서류의 서식을 개정함

○ 원산지확인서와 원산지소명서에 ‘RCEP 원산지국가 확인’란을 신설하여 국내발생 부가가치 비율과 최소공정 외의 공정 수행 여부를 기재하도록 함

[그림 Ⅳ-2] 원산지확인서 발췌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2. 7. 5.〉

원산지(포괄)확인서(Declaration of Origin)

※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를 기재합니다.

RCEP 원산지 국가 확인(Declaration of RCEP Country of Origin)				
14. 공급물품 연번 (S/N)	15. 국내 부가가치 20% 이상 발생 여부 (Domestic Value Addition of 20%)		16. 최소공정 이외의 공정 국내 수행 여부 (Processed Beyond Minimal Operations)	
	발생(Y)	미발생(N)	수행(Y)	미수행(N)
	[ ]	[ ]	[ ]	[ ]
	[ ]	[ ]	[ ]	[ ]
	[ ]	[ ]	[ ]	[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원산지를 확인합니다.

The undersigned hereby declares the origin of the good(s) in accordance with Article 12.1 of 「Enforcement Rules of Act on Special Cases of the Customs Act for the Implementation of Free Trade Agreements」.

작 성 자(Declarer) : (서명 또는 인)(Signature)
직 위(Title) :
상호 및 주소(Company Name/Address) :
작 성 일(Date) : 년 월 일 (YYYY/MM/DD)

자료: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 서식

[그림 Ⅳ-3] 원산지소명서 발췌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2. 7. 5.〉

원 산 지 소 명 서

※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를 기재합니다.

RCEP 원산지 국가 확인(Declaration of RCEP Country of Origin)						
26. 수출 대상국 (Export Destination)	27. 수출 대상국의 RCEP 부속서 I 양허표 부록 지정 물품 여부 (RCEP Appendix of Annex I)		28. 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 비율 (Domestic Value Addition)	29. 최소공정 이외의 공정 국내 수행 여부 (Processed Beyond Minimal Operations)		30. RCEP 원산지 국가 (RCEP Country of Origin)
	해당(Y)	미해당(N)		수행(Y)	미수행(N)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제4호, 제17조제1항제2호 및 제18조제1항제2호에 따라 작성 · 제출합니다.

작 성 자 : (서명 또는 인)
직 위 :
상 호 및 주 소 :
작 성 일 : 년 월 일

○○세관장(○○상공회의소 회장) 귀 하

자료: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 서식

□ 원산지확인서는 수출물품뿐 아니라 수출물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재료의 생산자가 발급하는 서류임에도 RCEP 원산지국가 수출물품의 생산자만 확인하도록 하고 있음

○ 작성방법에서 RCEP 원산지국가 확인란은 RCEP의 적용을 위해 수출물품의 생산자가 수출자에게 원산지확인서를 발급하는 경우에 작성한다고 명시함

□ 그러나 RCEP 원산지국가를 결정하기 위해 원산지상품의 생산에 사용된 재료에 포함된 공정이나 가치가 고려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즉 수출물품의 재료의 생산자가 원산지확인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도 RCEP 원산지국가 확인란을 작성할 필요가 있을지 살펴보고자 함

□ 우선 한국산 원산지재료는 전체가격을 최종 원산지상품의 국내가치에 포함시킬 수 있으므로 국내부가가치 20% 이상 발생 여부를 재료 생산자가 확인할 필요가 없음

○ 한국산 원재료의 가격은 재료의 생산자와 상품의 생산자 간의 구매내역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며 원산지확인서를 통해 증명하지 않아도 됨

□ 또한 비원산지재료를 공급하는 생산자의 경우 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를 증명하기 위해 원산지확인서보다는 국내제조확인서를 활용할 수 있음

○ 원산지확인서는 국내부가가치 20% 이상 발생 여부만을 확인하므로 비원산지재료에 포함된 국내발생 부가가치를 확인하기 어려움

○ 반면 국내제조확인서는 비원산지재료의 가격뿐 아니라 해당 재료의 생산에 사용된 원재료의 가격을 포함한 명세를 기재하도록 하고 있음

○ 따라서 국내제조확인서의 내용을 바탕으로 민감품목의 생산에 사용된 비원산지재료에 포함된 국내발생 부가가치를 산출할 수 있음

□ 그러나 비원산지재료가 RCEP의 다른 당사자에서 생산된 재료라면 이에 대한 원산지확인이 필요한 경우 원산지확인서와 국내제조확인서를 모두 발급해야 함

○ 민감품목이 원산지재료 생산물품이나 불완전생산물품인 경우 다른 RCEP 당사자에서 생산된 재료는 역내산재료로 인정받아야 원산지규정을 충족할 수 있음

- 예를 들어 세번변경기준인 경우 역내산재료는 세번변경이 발생하지 않아도 되며, 부가가치기준의 경우 역내산재료의 가격은 원산지재료가격에 포함됨

○ 따라서 RCEP의 다른 당사자에서 생산된 재료는 원산지확인서로 RCEP 원산지국가를 증명해야 하며, 국내제조확인서로 국내발생가치를 증명해야 함

□ 이는 RCEP에서 적용되는 규정에 따라 다른 당사자에서 생산된 재료나 상품의 원산지지위를 다르게 정하고 있기 때문임

○ 다른 당사자에서 생산된 재료나 상품은 일반 원산지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이를 사용하여 생산한 상품에 대한 작업 또는 가공한 당사자의 원산지재료로 간주함

○ 반면 민감품목의 원산지국가 결정요건에서는 다른 당사자에서 생산된 물품이 일반 원산지규정에 따라 원산지지위를 획득하더라도 비원산지재료로 간주함

□ 이와 같이 적용되는 규정에 따라 원산지지위가 변경되도록 정하고 있는 RCEP이 발효됨에 따라 이를 원산지확인서에 반영하여야 하는지 고려해 보아야 함

○ 원산지확인서와 국내제조확인서는 재료 공급자의 협조가 필요하며 이를 모두 발급하기 위해 재료 공급자는 시간 및 비용을 부담해야 함

□ 즉 다른 당사자에서 생산된 재료에 대한 국내부가가치를 원산지확인서로 확인할 수 있도록 양식을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음

○ 이를 통하여 다른 당사자에서 생산된 재료를 공급자의 원산지확인서와 국내제조확인서를 모두 발급하는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음

- RCEP 당사자가 아닌 국가 또는 관세영역에서 생산된 재료의 공급자는 국내제조확인서만 발급하면 됨

□ 한편 원산지확인서 작성방법에서는 RCEP 원산지국가 확인과 관련하여 국내부가가치 20% 이상 발생 여부를 수출물품이 민감품목인 경우에만 작성하도록 함

○ 수입당사자가 해당 수출물품을 민감품목으로 지정했는지를 확인하여 민감품목에 해당하는 경우 국내부가가치를 확인하도록 명시함

□ 그러나 수출물품의 생산자가 원산지확인서 발급 시 생산자는 수입당사자가 어디인지 알 수 없고, 따라서 수출물품의 민감품목 여부를 알 수 없는 경우가 있음

○ 생산자가 수출자에게 수출물품을 공급하는 때에 수입당사자를 특정할 수 없거나 수출자가 생산자에게 수입당사자를 공개하지 않는 경우가 있음

□ 따라서 수출물품의 생산자와 수출자가 다른 경우 국내부가가치 20% 이상 발생 여부는 수출자의 요청이 있는 때에 기재하도록 개정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음

○ 생산자가 수출물품의 민감품목 여부를 확인하여 관련 사항을 원산지확인서에 기재하기보다는 수출자의 요청에 따라 기재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임

□ 이를 통하여 수출물품의 민감품목 여부 및 국내부가가치의 확인에 대한 책임을 수출자에게 부담시키고 생산자의 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음

○ 다만 수출자가 수입당사자가 특정되지 않은 경우 모든 협정의 모든 사항에 대해 원산지확인서를 발급하도록 요청하기도 하므로 이에 대한 고려도 필요함

○ 따라서 수출물품이 민감품목인 경우 수출자의 요청이 있는 때에 국내부가가치 항목을 작성하도록 해야 함

□ 이와 같이 원산지증명서류를 정비하여 활용한다면 RCEP 원산지국가 확인이 보다 용이해지고 재료 또는 상품 생산자의 업무부담 또한 완화될 수 있으리라 기대됨

○ 원산지확인서, 국내제조확인서 등의 발급은 공급자의 협력이 필요하므로 공급자의 시간, 비용 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의 마련이 필요함

참고문헌

강성훈·이재선·김미정,『다자간 FTA 확산에 따른 누적기준의 이해와 활용방안』,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7.

관세청,「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발효에 따른 관세행정 운영지침」, 2022. 1.

국제원산지정보원,『원산지관리사 교육과정 Ⅱ(품목분류실무, 원산지결정기준)』, 2010.

박지은·제현정,「무역업계가 알아야 할 FTA 원산지 누적조항의 비교 및 시사점」,『TRADE FOCUS』, 2016년 제18호, 한국무역협회, 2016.

이명구·정재완·정재호,『FTA 이해와 활용』, 청람, 2016.

RCEP Secretariat, “Implementing Guidelines for the Rules of Origin of the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2022. 11. 4., p. 3.

고태진,「RCEP의 불완전함을 대변하는 관세차별조항」,『조세금융신문』, 2022. 9. 14., https://www.tfmedia.co.kr/news/article.html?no=131401, 검색일자: 2023. 2. 10.

관세청 관세용어사전, https://www.customs.go.kr/kcs/ad/tr/trTermView.do?mi=2902&s=&termId=1050, 검색일자: 2023. 3. 17.

YES FTA, https://www.customs.go.kr/ftaportalkor/cm/cntnts/cntntsView.do?mi=11020&cntntsId=5740, 검색일자: 2022. 11. 21.

YES FTA, https://www.customs.go.kr/ftaportalkor/cm/cntnts/cntntsView.do?mi=3455&cntntsId=1110, 검색일자: 2023. 2. 17.

세관국경보호국(CBP), https://www.cbp.gov/trade/nafta/guide-customs-procedures/other-instances-confer-origin/accumulation, 검색일자: 2023. 2. 22.

관세연구 22-03
RCEP 관세차별조항의 이해와 적용

발 행 2022년 12월 30일
저 자 홍용기 · 이재선
발행인 김재진
발행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3 0 1 4 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36
TEL: 044-414-2114(대) www.kipf.re.kr
등 록 1993. 7. 15. 제2014-24호
조판및인쇄 (주)세일포커스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22 ISBN 979-11-6655-216-8

* 잘못 만들어진 책은 바꾸어 드립니다.

OPEN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관세연구 22-03

RCEP 관세차별조항의 이해와 적용

한국조세재정연구원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36
TEL | 044.414.2114 www.kipf.re.kr

93320
9 791166 552168
ISBN 979-11-6655-216-8